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4분기

Vol.17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국가회계 동향

-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 해외 공공부문 회계기준 동향

| 국가 결산 및 교육 동향

-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2018년 결산 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국가회계 사이버교육 동영상 촬영
-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실시
- 2018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재정통계 동향

- 2017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 공익회계법인 동향

-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배포
-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발표
-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발간

| 특집

- IFAC & CIPFA의 국제공공부문재무회계책임성지표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 발표
-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방안 위탁연구 최종보고회 결과
- 연금총당부채 주요국(해외) 사례

| 센터 동향

- 제24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2018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2018년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최종보고심의회 개최
-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세미나

-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 2018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운영
- 찾아가는 성과확산 세미나

| 2018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 공지사항

-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뉴스레터 이용 안내
- 홈페이지 이용 안내



kipf

국가회계 재정통계

2018년 4분기

Vol. 17

News Lette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 | |
|--|----|
| 01. 국가회계 동향 | 2 |
| ①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 2 |
| ② 해외 공공부문 회계기준 동향 | 5 |
| 02. 국가 결산 및 교육 동향 | 8 |
| ①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 8 |
| ②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 9 |
| ③ 2018년 결산 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 10 |
| ④ 국가회계 사이버교육 동영상 촬영 | 11 |
| ⑤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실시 | 12 |
| ⑥ 2018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 13 |
| 03. 재정통계 동향 | 14 |
| ① 2017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 14 |
| 04. 공익회계법인 동향 | 24 |
| ①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배포 | 24 |
| ②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발표 | 24 |
| ③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발간 | 25 |
| 05. 특집 | 35 |
| ① IFAC & CIPFA의 국제공공부문재무회계책임성지표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 발표 | 35 |
| ②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방안 위탁연구 최종보고회 결과 | 38 |
| ③ 연금충당부채 주요국(해외) 사례 | 42 |
| 06. 센터 동향 | 56 |
| ① 제24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 56 |
| ② 2018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 57 |
| ③ 2018년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최종보고심의회 개최 | 58 |
| ④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 60 |
| ⑤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 61 |
| 07. 세미나 | 62 |
| ①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 62 |
| ② 2018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운영 | 70 |
| ③ 찾아가는 성과확산 세미나 | 74 |
| 08. 2018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 77 |
| 09. 공지사항 | 90 |
| ①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 90 |
| ② 뉴스레터 이용 안내 | 90 |
| ③ 홈페이지 이용 안내 | 90 |

01 국가회계 동향

1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동향

가.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운영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회계제도 개선 T/F(이하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 T/F는 2014년 국가회계 체계 개편의 후속 작업으로 2015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다. T/F는 국가회계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논의하고,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국가회계기준과 예규, 결산보고서의 순차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소위원회 안건을 확정하였다. 9월 13일 1차 T/F회의에서는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개정 안건별로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 및 1차 검토를 하고, 이를 토대로 각 안건을 2차와 3차로 나누어 10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추가 검토 및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가회계제도 개선 T/F 회의 개최 현황〉

| 개선과제 | 검토사항 | 1차 (9/13(목)) | 2차 (10/11(목)) | 3차 (10/12(금)) | 검토 결과 |
|---------------------|--|-----------------|------------------|------------------|-------|
| 1. 용자 회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금을 ‘저리용자금’으로 용어 수정 · 유효이자율 정의 삭제 고려 · 저리용자금 판단 기준 검토 | 검토 | | 검토 | 장기 과제 |
| 2. 사용수익권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수익권 자산차감계정 · 거래상대방 무형자산과 동일 측정 · 사용수익권 관련 재평가 | 검토 | 검토 | | 논의 안건 |
| 3. 비배분비용·수익 정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배분 비용·수익 정의 · 비배분 비용·수익 구분 기준 명확화 | 검토 | | 검토 | 의결 안건 |
| 4.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부채 이관 없이 명칭만 변경되는 조직개편 회계처리 | 검토 | 검토 | | 현행 유지 |
| 5. 공무원 연금충당부채 정보 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연금 지방직 등 정보 세분화 | 검토 | | 검토 | 보고 안건 |

| 개선과제 | 검토사항 | 1차 (9/13(목)) | 2차 (10/11(목)) | 3차 (10/12(금)) | 검토 결과 |
|-----------------|--------------------------------------|-----------------|------------------|------------------|-------|
| 6. 장기재정전망 적용 관련 | • 장기재정전망 등 재무적 가정 적용 명시 | 검토 | | 검토 | 장기 과제 |
| 7. 신종자본, 투자일임계약 | • 신종자본증권, 투자일임계약 지분증권 처리, 내재파생상품 미분리 | 검토 | 검토 | | 보고 안전 |
| 8. 무상증자 시 출자금 | • 무상증자 등 자본전입 시 출자금 변동 없음을 명확히 설명 | 검토 | 검토 | | 보고 안전 |
| 9. 소송충당부채 전입액 | • 소송충당부채 전입액 정의 오류 | 검토 | 검토 | | 장기 과제 |
| 10. 지출반납금 | • 지출반납금 이자 원본가산 | 검토 | 검토 | | 현행 유지 |
| ※ 별도 「국가회계법」 | •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검토 | | 검토 | 장기 과제 |
| |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 검토 | | 검토 | 장기 과제 |

3차례에 걸친 T/F회의의 결과 5개의 심의안전, 3개의 보고안전이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안전으로 상정되었다.

나.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제도 개정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한 2018년 마지막 소위원회가 11월 1일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기획재정부 오규택 재정관리국장의 주재로 민간전문위원 8인이 참석하여 안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안건 및 논의 결과〉

| 개회일 | 구 분 | 안 건 | 논의 결과 |
|-------------|--------------|--|----------|
| 11/1 (목) | 의결안건 | 비배분비용·수익 정의 및 항목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배분비용·수익 정의 비배분비용·수익 구분 예시 삭제 | 수정 의결 |
| | 논의안건 | 사용수익권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수익권 자산차감계정 거래상대방 무형자산과 동일 측정 사용수익권 관련 재평가 | 유보 후 재논의 |
| | 보고안건 (3건) | 실무해설 개정사항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연금 지방직 등 정보 세분화 신종자본증권, 투자일임계약 구분, 내재파생상품 미분리 무상증자 등 자본전입 시 출자금 변동 없음을 명확히 설명 | 원안 의결 |

소위원회 안건은 3차례에 걸친 T/F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소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1개의 최종 안건을 서면결의의 형태로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 상정·의결하였다. 최종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사용수익권 평가규정 개선’ 등 유보된 과제에 대하여도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아갈 계획이다.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소위원회(11.1),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3층 회의실〉

다. 제25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개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 서면결의 형태로 진행되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부령)」 일부개정(안)과 「원가 계산에 관한 지침(예규)」 등 일부 개정(안)을 최종 심의·의결하였다. 이 개정사항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하여 향후 관계부처 의견 조회를 거친 후 공표되며,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해외 공공부문 회계기준 동향

가.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¹⁾

1) IPSASB, 2018년 12월 정례회의 개최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이하 'IPSASB')는 2018년의 마지막 정례회의를 2018년 12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에 걸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Technical Director의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으로 '사회보장급여',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 '공공부문 측정', '리스' 등 총 8개의 IPSASB 프로젝트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은 프로젝트별 주요 논의사항과 그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 주요 논의사항 | 논의 결과 |
|--|--|
| 안건 5.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42, 사회보장급여(안)'에 대한 IPSASB 위원과 TA, Observer의 의견 반영 결과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 42, 사회보장급여(안)'의 심의 및 승인 (2019년 1월 말 발표 예정) IPSASB는 'IPSAS 42, 사회보장급여'의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설정함 |

1) IPSASB: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

| 주요 논의사항 | 논의 결과 |
|--|---|
| 안건 6. 집합적 서비스, 개인적 서비스, 재난구조(Collective and Individual Services and Emergency Relief)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67, Collective and Individual Services and Emergency Relief(안)* 검토 및 자문기간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적 서비스, 개인적 서비스, 재난구조에 관한 실무지침(AG)을 'IPSAS 19, 총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에 추가하기 위한 공개초안 ED 67은 집합적 서비스, 개인적 서비스의 경우 총당부채가 인식되지 않지만, 특정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구조의 경우 총당부채가 인식될 수 있음을 제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재난구조(Emergency Relief)를 정부의 지속 활동과 특정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구분 IPSASB는 ED 67을 심의·승인하였음(2019년 1월 말 발표 예정) |
| 안건 7. 개선과제(Improvement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66, Long-term Interests in Associates and Joint Ventures (Amendments to IPSAS 36) and Prepayment Features with Negative Compensation (Amendments to IPSAS 41)의 최종 검토 및 편집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와의 정합성 유지를 목적으로 IAS 28 및 IFRS 9 개정사항을 각각 IPSAS 36과 IPSAS 41에 반영하기 위한 공개초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ED 67을 심의·승인 (2019년 1월 말 발표 예정) |
| 안건 8. 공공부문 특유 금융상품(Public Sector Specific Financial Instrument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PSSFI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PSSFI 회계처리(안) 검토 화폐용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정의 충족 X ☞ 별도의 지침 마련 필요함 유통통화, IMF Quota, 특별인출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의 정의 충족 O ☞ 별도의 지침 마련 불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PSSFI T/F의 회계처리 제안 지지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는 PSSFI의 경우 적용 사례 등의 규정 외 지침(Non-Authoritative Guidance) 형태로 개발 금융상품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PSSFI에 대해서는 T/F가 적절한 형태의 지침을 개발할 예정임 |
| 안건 9. 공공부문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에 수록될 역사적 원가, 대체원가, 공정가치, 이행원가에 관한 신규 실무지침(AG)의 page-by-page 검토 CP에 추가된 2개 섹션에 대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fore you read" introduction, Chapter 4의 Transaction Cost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ED, Public Sector Measurement의 목차가 포함된 CP를 발행 확정 CP를 통해 구상 중인 IPSAS의 형태 및 구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 주요 논의사항 | 논의 결과 |
|---|--|
| 안건 10. 수익(Revenue(IFRS 15 Alignment))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raft ED를 적용할 수익거래의 범위 제안 • IFRS 15의 'Customer'를 공공부문 관점에서 대체할 수 있는 용어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draft ED의 적용 범위를 IFRS 15의 적용 대상이면서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SPOA)을 사용할 수 있는 수익거래로 결정 • IFRS 15의 'Customer'를 'Purchaser'로 대체할 것을 의결 |
| 안건 11. 보조금 및 자원 이전 - 시간 요건(Grants and Transfers - Time Requirement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 요건이 부여된 자원 이전 이슈의 해결방안에 대한 관계자 의견 분석 결과 보고 * (a) 재무제표 표시/공시 강화 (b) 삭제 (c) 'other obligation(기타 의무)' 인식/대체 (d) 'net assets/equity(순자산)' 인식/대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다음을 잠정적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 제공자 입장에서 강제성을 가진 거래 (transactions with enforceable mechanisms)는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SPOA)으로 회계처리되어야 함 - 강제 집행할 수 없는 거래로 인한 수익은 수취 가능할 때 인식되어야 함 - 자원 제공자의 의도 또는 예상에 관한 내용은 재무제표 표시/공시 강화를 통해 전달되어야 함(a안) |
| 안건 12. 리스(Lease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프로젝트의 로드맵에 대한 검토 •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 개정안의 단독 발간 가능성 검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PSASB는 리스 프로젝트 로드맵 검토 결과 다음을 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 및 할인리스 회계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를 전제로, 'ED 64, 리스'에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 개정안 채택 - 관계자 의견을 전수 분석하기 위한 T/F 조직 -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 개정안만 단독 발간하지 않음 |

02

국가 결산 및 교육 동향

1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배포 및 중앙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앞두고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Ⅲ·Ⅳ』을 발간하였다. 『2018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Ⅲ·Ⅳ』은 국가 결산 개설, 결산보고서 작성양식, 디브레인을 통한 결산서 작성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 사항 등 각 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결산 담당자들이 2018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회계연도 중앙관서 결산교육(11.28), 한국재정정보원 교육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실시된 중앙관서 결산교육에서 국가 결산 주요 변동 및 유의 사항과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작성 오류사항을 결산 담당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2018회계연도 국가 결산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2018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실시 결과

「2018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지난 6월 20일 서울지역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2차에 걸쳐 전국 8개 지역(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 제주, 강릉, 세종)에서 실시되었다. 본 교육은 기획재정부 주최로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올해부터는 안정적인 교육 관리와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전문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교육을 주관하였다.



〈제12차 재무결산실무 서울 교육(11.16), 세종컨벤션센터〉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등 3개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월에는 재무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재무결산실무 과정이 2회(회당 2일간) 실시되었다. 본 과정은 수정 전 시산표 마감 전 유의 사항, 결산조정분개, 내부거래실무,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결산 담당자들이 2018회계연도 결산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 수행 결과 12회차에 걸쳐 총 1,289명의 교육생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만족도는 4.64점(전년도 4.57), 강

의 만족도는 4.58점(전년도 4.55), 교육환경 만족도는 4.74점(전년도 4.62)으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은 2019년에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http://edu.kipf.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2018년 결산 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 동안 제주도 대명리조트에서 결산 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김선길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과장이 참석하여 결산기간 동안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달하였고,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중앙관서 재무결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8년 결산에도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그 소임을 다해주기를 당부하였다.



〈2018회계연도 재무결산 담당자 워크숍(11.19), 제주도 함덕 대명리조트〉

기획재정부 장시열 사무관은 ‘국가회계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고,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현지용 팀장은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라는 주제로 재무제표상 자산·부채와 개별법 재산·채무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재정정보원 이주환 과장은 2018년도 디브리엔 시스템 개선사항을 설명하였다.

올해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결산 담당자 집합교육을 주관한 첫 번째 해로, 교육 커리큘럼 및 강의 내용 그리고 운영진의 행사 지원 개선 등으로 행사 만족도(4.81/5.0만점)가 전년(4.62)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4 국가회계 사이버교육 동영상 촬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예규 등이 개정되면서 『국가회계편람』 제3판이 발간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은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전면개정, 유·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평가 등이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존 국가회계 사이버교육 강의 48차시 중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국가회계 예규’, ‘금융자산의 회계처리’, ‘우발상황 회계처리지침’ 등 4개 차시 동영상을 업데이트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개정된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 공무원 이러닝 학습 영상으로,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나라배움터 (<http://mosf.nhi.go.kr>)를 통해 업데이트된 교육영상을 학습할 수 있다.

5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실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부터 국가회계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중앙관서에 적합한 교육을 능동적으로 제공하고자, 해당 부처에서 요청하는 교육을 직접 찾아가 제공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 서비스를 마련하였다.

2018년 12월 26일에 경찰청 본청에서 그 첫 번째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최금주 회계사는 경찰청 국유재산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국유재산 오류 사례와 그 결과로 파생되는 재무제표의 오류를 소개하고 업무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2시간 동안 교육하였다.



〈2018년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12.26), 경찰청 본청 13층〉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신청은 국가회계교육 포털(<http://edu.kipf.re.kr>)에서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다.

6 2018년 일선관서 결산교육 강의

기획재정부는 2018회계연도 국가 결산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18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 일선관서 결산교육(11.23), 부산적십자회관 대강당〉

2018년 일선관서 결산교육은 11월 12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일선관서 회계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전국 주요 12개 도시(경기, 서울, 인천, 강원, 세종, 제주, 순천, 광주, 대구, 전주, 창원, 부산)에서 실시되었고, 총 4,894명의 회계 관련 공무원들이 정부결산 작성지침, 재무결산 오류 사례, 국유재산 결산 교육 이수를 완료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재무결산 오류 사례 강의를 통해 국유재산·물품 관련 디브레인 업무 처리 시 발생하기 쉬운 재무결산 오류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교육함으로써 향후 일선관서 업무담당자들이 관련 오류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3

재정통계 동향

1 2017년 말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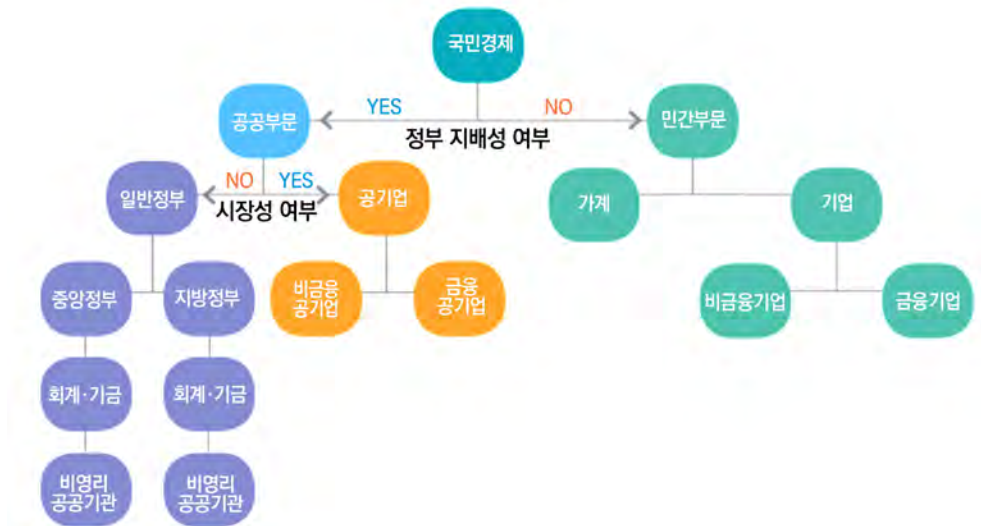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12월 27일(목)에 발표한 2017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기준에 따라 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D1)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 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를 다음 해 12월에 산출·공개하고 있다.

가. 산출 범위

1) 포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정부의 지배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하여 공공부문 포괄 범위를 설정한 후, 시장성 여부를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공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공부문 Decision tree〉





- **정부 지배성 여부 판정 기준:** 정부가 과반수 이상의 의결권, 주요 인사에 대한 임명권 등을 보유한 경우 지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공부문으로 분류
- **시장성 여부 판정 기준:**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이거나, 정부판매 비율이 80% 이상이면,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일반정부로 분류

2017회계연도 공공부문 포괄 범위의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상 공사·공단, 공영방송사, 국립대학법인 등을 포함하여 총 482개 기관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 중 시장성이 없는 314개 기관은 정부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일반정부(비영리공공기관)로 분류하고 시장성이 있는 168개 기관은 비금융공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 금융공기업(13개)은 제외, 「지방공기업법」상 직영공기업(248개)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

2) 부채 범위

공공부문 부채(D3)는 발생주의 회계를 원칙으로 하며, 부채를 미래의 특정 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상품으로 정의한다. 한편, 채무상품은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미지급금 등으로 분류하여 집계하고 있다.

나. 공공부문 부채통계 현황

1) 부문별 현황

2017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1,044.6조원(GDP 대비 60.4%)으로 전년 대비 8.0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2.7%p 감소하였다.

일반정부 부채는 735.2조원(GDP 대비 42.5%)으로, 전년(717.5조) 대비 17.7조원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로는 1.2%p 감소하였고,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78.5조원(GDP 대비 21.9%)으로 전년(386.4조) 대비 7.9조원, GDP 대비 1.6%p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 구분 | 2016년(A) | | 2017년(B) | | 증감(B-A) | |
|---------------------|----------|--------|----------|--------|---------|--------|
|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 공공부문 부채(A+B-C) | 1,036.6 | 63.1 | 1,044.6 | 60.4 | 8.0 | △2.7 |
| A. 일반정부 부채(a+b-c) | 717.5 | 43.7 | 735.2 | 42.5 | 17.7 | △1.2 |
| a. 중앙정부 | 661.2 | 40.3 | 683.4 | 39.5 | 22.2 | △0.8 |
| b. 지방정부 | 66.8 | 4.1 | 63.9 | 3.7 | △2.9 | △0.4 |
| c. 내부거래 | 10.5 | 0.6 | 12.1 | 0.7 | 1.6 | 0.1 |
| B. 비금융공기업 부채(a+b-c) | 386.4 | 23.5 | 378.5 | 21.9 | △7.9 | △1.6 |
| a. 중앙 공기업 | 350.9 | 21.4 | 345.8 | 20.0 | △5.1 | △1.4 |
| b. 지방 공기업 | 43.6 | 2.7 | 41.2 | 2.4 | △2.3 | △0.3 |
| c. 내부거래 | 8.1 | 0.5 | 8.5 | 0.5 | 0.4 | 0.0 |
| C. 내부거래 | 67.4 | 4.1 | 69.2 | 4.0 | 1.8 | △0.1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8.12.27)」 편집

2) 부채 항목별 현황

2017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D3)는 채무증권 756.8조원, 차입금 117.8조원, 기타 미지급금 169.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증권이 전체 부채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

(단위: 조원, %, %p)

| 구분 | 2016년(A) | | 2017년(B) | | 증감(B-A) | |
|-----------|----------|---------|----------|---------|---------|--------|
|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규모 | 구성비 |
| • 채무증권 | 753.8 | (72.6) | 756.8 | (72.4) | 3.0 | (△0.3) |
| • 차입금 | 113.2 | (11.0) | 117.8 | (11.3) | 4.7 | (0.3) |
| • 기타 미지급금 | 169.6 | (16.4) | 169.9 | (16.3) | 0.3 | (△0.1) |
| 합계 | 1,036.6 | (100.0) | 1,044.6 | (100.0) | 8.0 | -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8.12.27)」

다. 공공부문 부채 부문별 증감 분석

1) 일반정부 부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부채가 각각 22.2조원 증가, 2.9조원 감소하였고, 중앙-지방 간 내부거래가 증가(1.6조)하여 전년 대비 17.7조원 증가한 735.2조원(GDP 대비 42.5%)이지만 GDP 대비로는 1.2%p 감소하였다.

가) 중앙정부 부채

2017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부채는 전년 661.2조원(GDP 대비 40.3%) 대비 22.2조원이 증가한 683.4조원(GDP 대비 39.5%)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 구분 | 2016년(A) | | 2017년(B) | | 증감(B-A) | |
|---------|----------|--------|----------|--------|---------|--------|
|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 ◆ 중앙정부 | 661.2 | 40.3 | 683.4 | 39.5 | 22.2 | △0.8 |
| • 회계·기금 | 620.7 | 37.8 | 645.4 | 37.3 | 24.7 | △0.5 |
| • 비영리기관 | 52.6 | 3.2 | 50.2 | 2.9 | △2.4 | △0.3 |
| • 내부거래 | △12.1 | △0.7 | △12.3 | △0.7 | △0.2 | 0.0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8.12.27)」

(1) 중앙회계·기금

2017회계연도의 중앙회계·기금은 전년 620.7조원(GDP 대비 37.8%) 대비 24.7조원이 증가한 645.4조원(GDP 대비 37.3%)으로 산출되었다.

(채무증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발행한 공채가 3.4조원 감소하였으나, 일반회계 적자보전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국고채가 25.8조원 증가하였다.

(단위: 조원)

| 구분 | 2016년(A) | 2017년(B) | 증감(B-A) |
|----------------|----------|----------|---------|
| ◆ 국채 | 595.0 | 626.8 | 31.8 |
| • 국고채 | 524.3 | 550.2 | 25.8 |
|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 6.7 | 7.2 | 0.5 |
| • 국민주택채권 | 64.0 | 69.4 | 5.4 |
| ◆ 공채 | 25.6 | 22.2 | △3.4 |
|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 12.6 | 9.7 | △2.9 |
|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 13.0 | 12.5 | △0.5 |
| ◆ 자기 국·공채 | △111.8 | △120.2 | △8.4 |

출처: 2017회계연도 기금별 결산보고서

(차입금)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금액 및 BTL 미지급금*이 전년 대비 각각 5.4조원, 0.4조원 증가하였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취득한 일반 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반대급부로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대료의 금액

(단위: 조원)

| 구분 | 2016년(A) | 2017년(B) | 증감(B-A) |
|------------|----------|----------|---------|
| ◆ 청약저축 | 59.9 | 65.3 | 5.4 |
| ◆ BTL 미지급금 | 7.6 | 8.0 | 0.4 |

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2) 비영리공공기관

2017 회계연도의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은 전년 52.6조원(GDP 대비 3.2%) 대비 2.4조원이 감소한 50.2조원(GDP 대비 2.9%)으로 산출되었다.

기관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료 등을 재원으로 예금보험기금채권을 상환하여 금융부채가 감소(△3.3조)하였으며, 자산관리공사의 배드뱅크채권 인수자금 조달, 기업정상화 지원 등 사업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로 전년 대비 증가(1.0조)하였다.

나) 지방정부 부채

2017 회계연도의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 66.8조원(GDP 대비 4.1%) 대비 2.9조원이 감소한 63.9조원(GDP 대비 3.7%)으로 산출되었다.

(단위: 조원, %, %p)

| 구분 | 2016년(A) | | 2017년(B) | | 증감(B-A) | |
|-----------|----------|--------|----------|--------|---------|--------|
|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 ◆ 지방정부 부채 | 66.8 | 4.1 | 63.9 | 3.7 | △2.9 | △0.4 |
| • 회계·기금 | 67.7 | 4.1 | 64.0 | 3.7 | △3.7 | △0.4 |
| • 비영리기관 | 1.0 | 0.1 | 1.0 | 0.1 | 0.0 | 0.0 |
| • 내부거래 | △2.0 | △0.1 | △1.1 | △0.1 | 0.9 | 0.0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8.12.27)」

(1) 지방회계·기금

2017회계연도의 지방회계·기금은 전년 67.7조원(GDP 대비 4.1%) 대비 3.7조원이 감소한 64.0조원(GDP 대비 3.7%)으로 산출되었으며 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 자치단체

전년 47.8조원 대비 2.1조원 감소한 45.7조원으로, 자치단체별 증감을 살펴보면 서울(0.2조원)이 증가하였고 인천(△0.9조원), 경기(△0.4조원), 경남(△0.4조원), 충남(△0.2조원) 등이 감소하였다.

• 교육자치단체

전년 19.9조원 대비 1.6조원 감소한 18.3조원으로 장·단기차입금 및 금융리스 부채 감소(△1.6조원) 등의 사유로 증가하였다.

(2) 비영리공공기관

전년 1.0조원 대비 증감 내역에 큰 변동이 없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비금융공기업 부채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전년 386.4조원(GDP 대비 23.5%) 대비 7.9조원 감소한 378.5조원(GDP 대비 21.9%)으로 집계되었다. 중앙(△5.1조원) 및 지방(△2.3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가 모두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기업 부채 감축정책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 비금융공기업은 토지주택공사(△4.7조원), 한국가스공사(△1.3조원) 등의 부채 감소로 5.1조원 감소하였다. 지방 비금융공기업도 지방공기업 정상화 대책 등에 따른 부채 감축 노력으로 SH공사(△1.4조원), 경기도시공사(△0.3조원), 인천도시공사(△0.2조원) 등 대부분의 기관이 감소하여 전기 대비 2.3조원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 구분 | 2016년(A) | | 2017년(B) | | 증감(B-A) | |
|-------------|----------|--------|----------|--------|---------|--------|
|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규모 | GDP 대비 |
| ◆ 비금융공기업 부채 | 386.4 | 23.5 | 378.5 | 21.9 | △7.9 | △1.6 |
| • 중앙 비금융공기업 | 350.9 | 21.4 | 345.8 | 20.0 | △5.1 | △1.4 |
| • 지방 비금융공기업 | 43.6 | 2.7 | 41.2 | 2.4 | △2.3 | △0.3 |
| • 내부거래 | △8.1 | △0.5 | △8.5 | △0.5 | △0.4 | 0.0 |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8.12.27)」

(LH) 임대물량 확대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1.7조원)이 증가하였으나, 차입금·공사채 상환(△6.8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4.7조원 감소하였다.

(한국가스공사) LNG선박 관련 금융리스 부채(0.3조원)가 증가하였으나, 차입금 감소(△2.3조원) 등으로 전년 대비 1.3조원 감소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공사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0.6조원 증가하였다.

3) 추세 분석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의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GDP 대비 비율*의 경우 그 증가 추이가 점차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감소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공부문 부채(D3) 비율은 '15년 이래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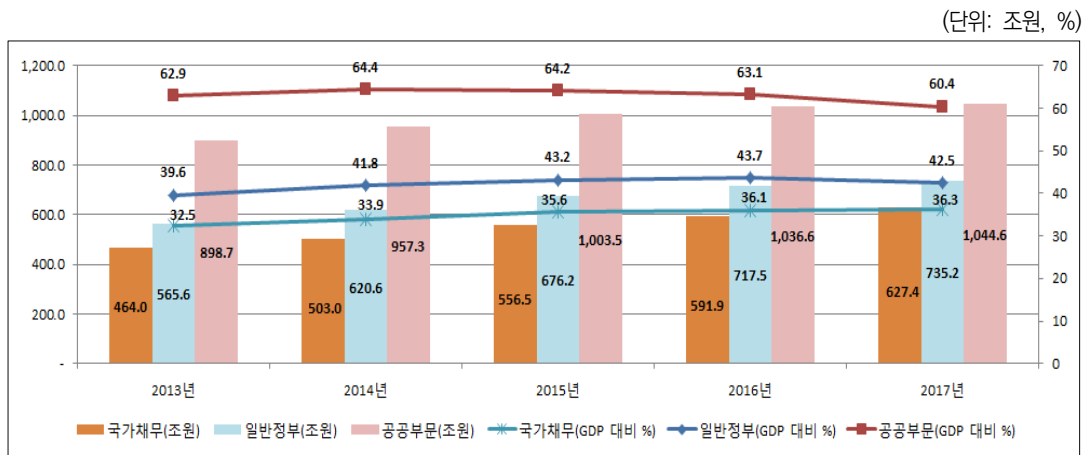
* 부채 유형별 GDP 대비 비율 증감

국가채무(D1): ('14년) 1.4%p → ('15년) 1.7%p → ('16년) 0.5%p → ('17년) 0.2%p

일반정부부채(D2): ('14년) 2.2%p → ('15년) 1.4%p → ('16년) 0.5%p → ('17년) △1.2%p

공공부문부채(D3): ('14년) 1.5%p → ('15년) △0.2%p → ('16년) △1.1%p → ('16년) △2.7%p

〈부채 유형별(D1, D2, D3) 연도별 추이〉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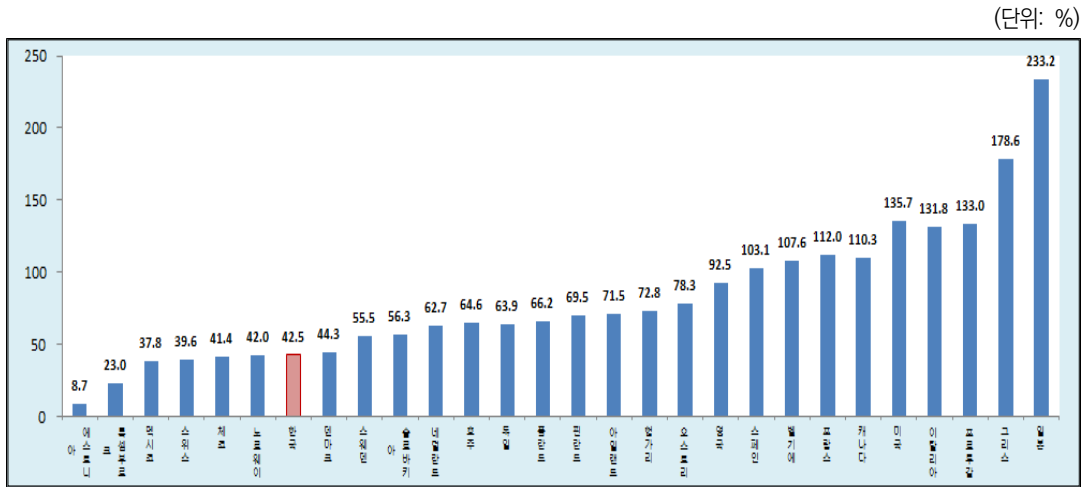
라. 국제 비교 및 공시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는 주로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우리나라는 2017년 GDP 대비 42.5%로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부채 수준 및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공부문 부채(D3)는 현재 OECD 국가 중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모두 산출하고 있는 국가가 7개에 불과하여 정확한 국제 비교가 어렵지만, 일본,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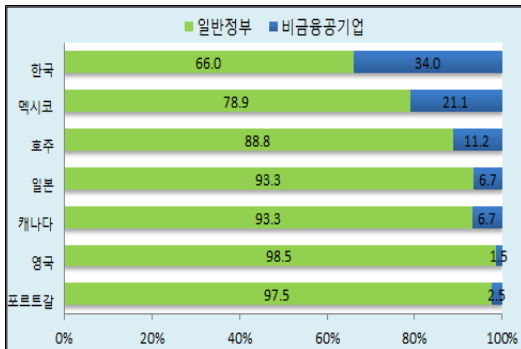
다만, 비금융공기업 부채 규모가 공공부문 부채(D3)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34%)으로 금년의 경우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감소(△7.9조원)되었으나,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채 관리가 요구된다.

〈2017년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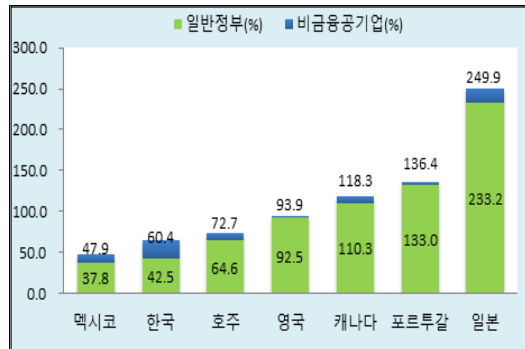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8.12.27)」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비중〉



〈공공부문 부채(D3) 산출국 현황〉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2018.12.27)」

한편, 매년 작성된 공공부분 부채는 OECD에 제출되어, OECD Statistics에 공시되고 있다.

Public Sector Debt, consolidated, nominal value

Customise Export Draw chart My Queries

Transaction: Total gross debt
Sector: General government
Measures: Current prices, annual levels
Adjusted: Not seasonally adjusted

Time: Q1-2015 Q2-2015 Q3-2015 Q4-2015 Q1-2016 Q2-2016 Q3-2016 Q4-2016 Q1-2017 Q2-2017 Q3-2017 Q4-2017

| Country | Unit | Q1-2015 | Q2-2015 | Q3-2015 | Q4-2015 | Q1-2016 | Q2-2016 | Q3-2016 | Q4-2016 | Q1-2017 | Q2-2017 | Q3-2017 | Q4-2017 |
|-----------------|------------------------------|---------------|---------------|---------------|---------------|---------------|---------------|---------------|---------------|---------------|---------------|---------------|---------------|
| Korea | Won, Millions | | | | 676 164 000.0 | | | | | 717 912 000.0 | | | |
| Lithuania | Euro, Millions | 10 367.4 | 10 199.7 | 10 544.0 | 10 492.3 | 10 468.5 | 11 169.4 | 11 011.9 | 11 844.6 | 11 565.3 | 11 777.7 | 11 585.8 | 12 504.6 |
| Lithuania | Euro, Millions | 16 273.9 | 15 968.7 | 16 084.8 | 17 454.1 | 17 065.9 | 17 303.7 | 17 948.1 | 17 364.6 | 17 366.2 | 16 621.1 | 16 056.5 | 16 372.2 |
| Luxembourg | Euro, Millions | 11 307.0 | 11 309.6 | 11 343.5 | 11 446.9 | 11 696.4 | 11 507.9 | 11 422.6 | 11 024.4 | 12 609.6 | 12 641.4 | 12 801.4 | 12 697.1 |
| Mexico | Mexican peso (P), Millions | 6 426 060.0 | 6 504 944.0 | 6 766 142.0 | 7 017 269.0 | 7 269 220.0 | 7 281 196.0 | 7 562 250.0 | 7 947 225.0 | 7 925 360.0 | 7 967 221.0 | 8 136 624.0 | 8 236 050.0 |
| Netherlands | Euro, Millions | (P) 503 607.0 | (P) 494 925.0 | (P) 494 726.0 | (P) 487 956.0 | (P) 487 697.0 | (P) 483 533.0 | (P) 474 310.0 | (P) 460 344.0 | (P) 470 474.0 | (P) 466 637.0 | (P) 458 606.0 | (P) 462 265.0 |
| New Zealand | New Zealand Dollar, Millions | | | | | | | | | | | | |
| Norway | Norwegian Krone, Millions | 1 106 331.0 | 1 120 979.0 | 1 174 691.0 | 1 188 623.0 | 1 227 068.0 | 1 264 260.0 | 1 273 264.0 | 1 268 700.0 | 1 421 037.0 | 1 391 298.0 | 1 378 156.0 | 1 367 823.0 |
| Poland | Zloty, Millions | 1 157 496.0 | 1 170 321.0 | 1 192 264.0 | 1 202 341.0 | 1 231 460.0 | 1 266 746.0 | 1 269 260.0 | 1 307 311.0 | 1 312 322.0 | 1 326 640.0 | 1 322 309.0 | 1 312 941.0 |
| Portugal | Euro, Millions | 246 375.5 | 245 335.3 | 249 280.1 | 247 341.1 | 249 616.6 | 255 953.3 | 260 412.9 | 256 740.2 | 259 252.4 | 265 109.7 | 265 121.3 | 259 674.3 |
| Slovak Republic | Euro, Millions | 48 784.3 | 48 549.2 | 48 223.8 | 48 939.3 | 48 543.5 | 47 231.1 | 47 881.9 | 47 192.1 | 48 792.5 | 48 119.6 | 52 823.0 | 47 982.0 |

출처: OECD 홈페이지

04

공익회계법인 동향

1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배포

기획재정부에서는 2017년 12월에 제정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를 배포(2018.12.27)하였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수탁연구과제로 진행하였으며,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원활한 실무 적용을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적용 범위,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 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는 재무상태표 및 운영성과표의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 및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다.

2018 회계연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외부회계감사 및 결산서류 공시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번 배포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가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 발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12월 5일 KB국민은행 교육장에서 열린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교육에 참여하였다. 이 교육은 한국공익회계사회, KB국민은행, 한국가이드스타 공동 주최로 2018년부터 새롭게 적용된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대한 공익법인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교육에서는 재정통계팀 박윤진 팀장이 공익법인회계기준과 제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삼일회계법인 변영선 상무가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하여

실무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날 교육에는 공익법인 실무자 150명이 참석하였다.

3 국가회계·재정통계브리프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 12월 배포된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 브리프를 발간하였다.

I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 | |
|-----|----------------------|
| 정도진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 박윤진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팀장 |
| 최종갑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회계사 |
| 장지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회계사 |

2017년 12월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최초로 재정·고시됨에 따라 2018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와 결산서류 공시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전면 적용되었다. 새로운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회계기준을 이해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서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공익법인회계기준이 기존의 회계처리 방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과 해설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실무상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지침서를 마련하였다. 실무지침서에서는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적용범위,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등을 다루고 있다.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에 대한 기본원리

1) 일반목적의 재무보고

- 이해관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제공
- 공익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과 제공능력 평가에 대한 정보제공
-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이들의 변동에 관한 정보제공

2) 공익법인 통합재무제표

- 단일 보고단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익법인 간 비교 가능성 및 이해관계자의 이해 가능성 제고

3) 발생주의·복식부기 기반의 재무보고

- (발생주의) 경제적 사건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여 성과 평가 및 미래 성과예측 등에 활용 가능
- (복식부기) 거래를 차변과 대변에 이중으로 인식하여 오류 가능성 감소

4) 공익법인 재무제표의 종류

- 공익법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으로 구성

5) 공익법인의 특수성 반영

- 재무제표 양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식, 순자산 구분, 수익·비용의 인식과 분류 등 공익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
-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외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6) 공익법인회계기준 구성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구성>

| 구 분 | 내 용 |
|--------|----------------------------|
|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
| | 제2조(적용) |
| | 제3조(보고실체) |
| |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
| | 제5조(재무제표) |
|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 |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
| |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
| |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

| | |
|------------------|--------------------------------|
| 제2장 재무상태표 |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 |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 | 제12조(유동자산) |
| | 제13조(투자자산) |
| | 제14조(유형자산) |
| | 제15조(무형자산) |
| |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
| | 제17조(유동부채) |
| | 제18조(비유동부채) |
| |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제20조(기본순자산) |
| | 제21조(보통순자산) |
| | 제22조(순자산조정) |
| 제3장 운영성과표 |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 |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
| | 제25조(사업수익) |
| |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
| | 제27조(사업비용) |
| | 제28조(사업외수익) |
| | 제29조(사업외비용) |
| | 제30조(공동수익 및 비용의 배분) |
| |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
| | 제32조(법인세비용) |
| 제4장 자산·부채의 평가 |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
| |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
| |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
| |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
| | 제37조(유기증권의 평가) |
| |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 | 제39조(공동자산 부채의 배분) |
| | 제40조(주식의 정의) |
| | 제41조(필수적 주식기재사항) |
| 제42조(선택적 주식기재사항) | |
| 제5장 주식 | 제43조(주식기재방법) |
| | 제1조(시행일) |
|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
| | 제3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
| | 제4조(재무제표 작성 경과규정) |
| | 제5조(소규모 공익법인의 한시적 단식부기 등 적용특례) |
| | 제1호 서식 |
| 별지 제1호 서식 | 재무상태표 |
| 별지 제2호 서식 | 운영성과표 |

2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범위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¹⁾, 같은 법 제 50조의3에 따라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공익법인²⁾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1)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 2) 자산총액 5억 이상 또는 수입총액 3억 이상인 공익법인

<사업목적별 의무공시 공익법인 현황>

(단위 : 개)

| 연도 | 사회복지 | 교육사업 | 학술·장학 | 예술문화 | 의료목적 | 기타 | 합 계 |
|-------|-------|-------|-------|------|------|-------|-------|
| 2015년 | 2,068 | 1,614 | 2,214 | 517 | 969 | 1,203 | 8,585 |
| 2016년 | 2,160 | 1,639 | 2,318 | 577 | 982 | 1,317 | 8,99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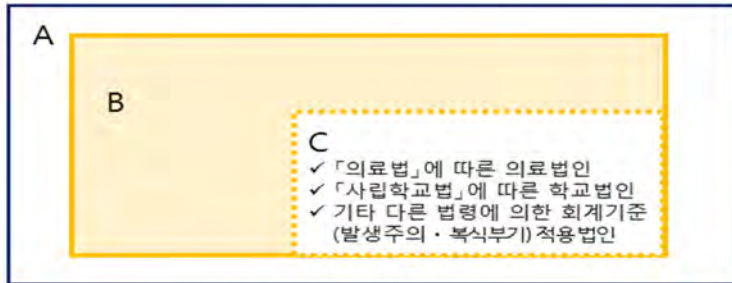
출처: NPO가이드스타 23호 2018년 2월 호

2)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예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은 근거 법률에 따른 별도의 회계기준이 존재하여 제외
-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따른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회계기준을 공익법인회계기준에 우선하여 적용
 - *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적용, 정부출연연구기관 회계기준 등 관련 법령에 회계기준이 있는 경우
- 소규모 공익법인¹⁾ 및 신설공익법인²⁾의 경우 2년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 새로운 기준의 적용부담을 다소 완화

- 1) 직전 회계연도 종료일의 총자산의 합계액이 20억원 이하인 공익법인
- 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설되는 공익법인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공익법인
- B: 외부감사의무법인 또는 의무공시대상법인
→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 C: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제외대상

3 재무제표 개요 및 작성기준

1) 재무제표 작성원칙

- 공익법인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구분표시하며, 기간별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기재무제표와 비교표시 하도록 규정함
- 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과 오류수정 회계처리
 - 회계정책의 변경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하던 회계정책이 변경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소급적용하며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비교재무제표를 재작성함
 - 회계추정의 변경은 회계적 추정치의 근거와 방법이 변경되는 것으로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함
 - 오류수정은 전기 이전의 회계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중대한 오류인 경우 소급적용 함
-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최초 적용 시 기준에 적용하던 회계처리와 공익법인회계기준의 회계처리 방식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전진 또는 소급하여 처리할 수 있음

2) 재무상태표 해설 및 실무사례

□ 실무지침서의 구성

-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재무상태표 주요 계정과목 별로 설명
 - 실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정별 개념과 함께 회계처리 유의사항, 구체적인 사례를 함께 제시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해설 예시>

(1)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자산으로 구성된다. 현금은 통화(지폐, 주화)와 통화대용증권을 말한다. 통화대용증권이란 현금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것으로 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등이 있다. 요구불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말한다.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주의사항]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

- ① 요구불예금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 ① 현금성자산에 속하는 단기금융자산은 회계연도 말에 아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해야 한다.

(사례 2-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분류

A공익법인은 2x18년 2월 1일 만기가 2x19년 1월 31일(1년 만기)인 정기예금 1억원을 가입하였다. (A공익법인은 12월말 결산법인이다.)

< 2x18. 2. 1 >

| | | | |
|--------------|-------------|--------------|-------------|
| (자) 단기 금융 상품 | 100,0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0 |
|--------------|-------------|--------------|-------------|

< 2x18. 12. 31 >

- 분개 없음 -

(본 예시에서는 정기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고려하지 않음)

(해설)

단기금융상품은 취득일을 기준으로 현금및현금성자산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회계연도 말에 만기일까지 3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았다라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는다.

□ 재무상태표의 주요 특징

- (유형자산재평가) 최초인식 이후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음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인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각각 비용과 부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규정
- (순자산개념 도입)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본순자산,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으로 구분
 - (기본순자산) 사용이나 처분에 영구적인 제약이 있어 주무관청 등의 허가가 필요한 순자산
 - (보통순자산) 순자산에서 기본순자산과 순자산조정을 차감 후 잔액
 - (순자산조정) 순자산의 가감 성격으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및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등이 포함

3) 운영성과표 해설 및 실무사례

□ 실무지침서의 구성

- 운영성과표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 및 사례 제시
 - 각 계정과목의 개념과 함께 대표적인 세부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실무사례를 함께 제공
 - 사업비용의 성격별(분배, 인력, 시설, 기타), 기능별(사업수행, 일반관리, 모금)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운영성과표 계정과목 해설 예시>

2)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1) 분배비용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이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으로 장학금, 지원금 등을 포함한다. 수혜자나 수혜단체는 공익목적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개인 및 단체를 의미한다. 분배비용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목적으로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일반관리비용이나 모금비용에서는 발생할 수 없고 사업수행비용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장학금이나 지원금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물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분배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

분배비용의 다른 예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공동모금을 통한 기부금수익을 다른 공익법인 단체에 배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주의사항] 분배비용의 개념

① 분배비용은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직접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정이므로 기타사업부문에서는 발생할 수 없다.

(사례 3-7) 분배비용

2x18년 10월 1일 장학사업을 위해 10명의 학생을 선발하여 개인당 1,000,000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2x18년 12월 1일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5,000,000원의 쌀을 구입하여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찾아 지급하였다.

| | | | |
|------------------|------------|--------------|------------|
| < 2x18. 10. 1 > | | | |
| (차) 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 | 10,0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10,000,000 |
| < 2x18. 12. 1 > | | | |
| (차) 재 고 자 산 | 5,000,000 | (대) 현금및현금성자산 | 5,000,000 |
| (차) 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 | 5,000,000 | (대) 재 고 자 산 | 5,000,000 |

□ 운영성과표의 주요 특징

- (기부금수익) 기부약정시점이 아닌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며, 현물을 기부 받는 경우 수익금액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인식
-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
- (보조금수익) 기부금과 성격이 동일하므로 일반기업회계기준의 보조금회계처리가 아닌 공익법인회계기준의 기부금회계처리와 동일하게 인식
- (사업비용의 기능별 구분)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
- (사업비용의 성격별 구분) 분배비용, 인력비용, 시설비용, 기타비용으로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부문이나 주석에 기재

4) 주식 해설 및 실무사례

-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1조는 15개의 필수 주식 기재사항을 명시
 - 주식사항을 적절하게 기재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 제시
 - 주의사항, 작성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확한 주식 기재가 가능하도록 유도

5) 기타 재무제표 작성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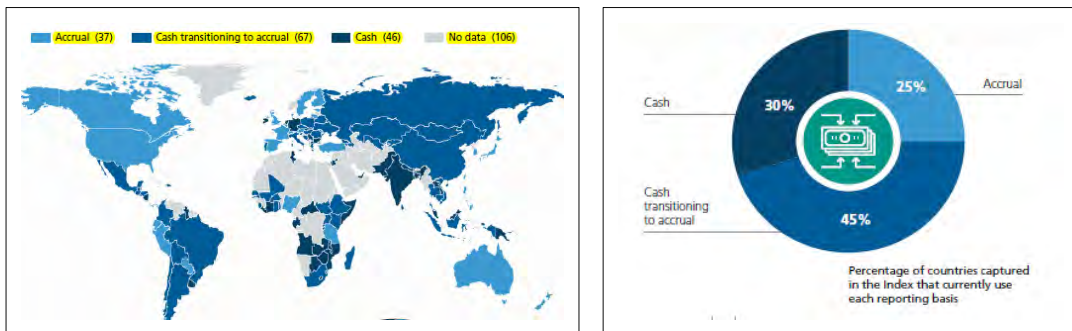
- (구분회계)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공익목적사업부문으로 그 외의 경우는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함
- (공통자산·부채 및 공통수익·비용의 배분) 공익목적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배분해야 함
- (통합재무제표의 작성 및 내부거래 제거)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부문과 기타사업부문으로 구분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익법인 전체를 하나의 작성단위로 보아 통합한 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함

이 보고서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박윤진 팀장(044-414-2569), 최종갑 회계사(044-414-2582)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IFAC & CIPFA의 국제공공부문재무회계책임성지표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 발표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과 공공부문의회계사협회(Chartered Institute of Public Finance and Accountancy)가 2018년 Status Report에서 발표한 ‘국제 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지표(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 이하 ‘Index’)’의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함

가. 해외국의 재무보고 기준 적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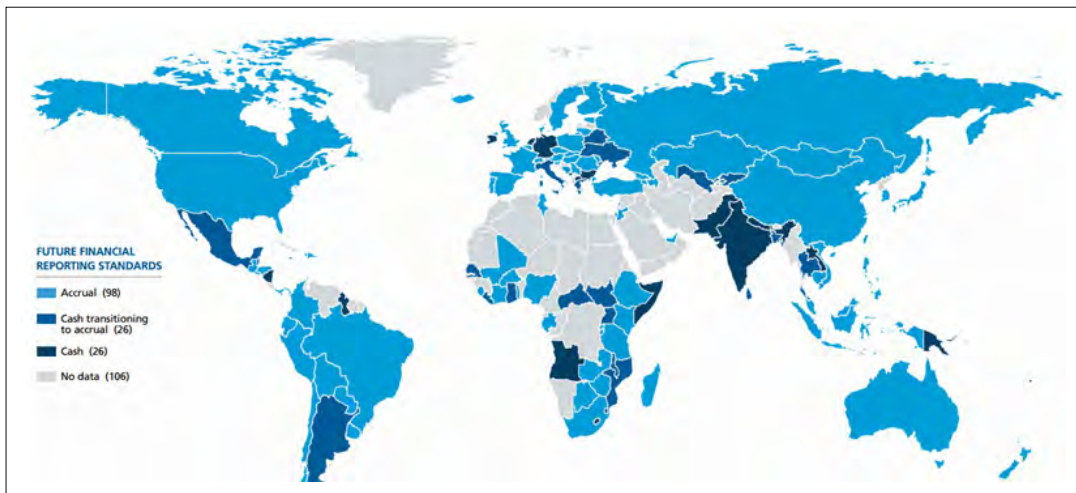
출처: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2018 Status Report)

전 세계 150개국 중 37개국(25%)이 발생주의 보고를 하고 있고, 47개국(45%)은 현금주의 보고에서 발생주의 보고로 전환 중에 있으며, 나머지 46개국(30%)은 아직 현금주의 보고를 하는 중이다. 참고로 IPSAS 최초 적용에 관한 기준서(IPSAS 33)는 IPSAS 적용 일자를 “IPSAS 최초 적용 국가가 발생주의 IPSAS를 도입하여 작성한 최초 전환(transitional) 재무제표 또는 최초 IPSAS 재무제표를 발표한 기간의 시작일”로 정의함에 따라, 2018년에 최초로 IPSAS 재무제표를 발표한 몇몇 국가는 현재 동 Index에서 ‘transitioning to IPSAS’로 분류되었다.

발생주의 보고 중인 37개국 중 51%가 IPSAS를 활용 중인데, 직접 또는 간접 적용 국가가 각각 5개국, 준용(reference point) 중인 국가가 9개국이다. 이 외에 현재 발생주의 보고를 하지 않는 나라로 간주된 국가들도 재무보고 시 발생주의 또는 현금주의 IPSAS를 활용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나. 발생주의 보고의 전망

성공적인 발생주의 전향에는 많은 어려움(challenges)과 지연(delays)이 수반되지만, 향후 5년 이내에 전 세계 65%가 발생주의 재무보고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출처: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2018 Status Report)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 걸쳐 발생주의 도입이 이루어질 전망이지만, 아프리카, 남미 및 카리브, 아시아 지역에서 그 움직임이 가장 활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제/지역 기구들의 지속적인 지지가 세계 지역의 발생주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 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EPSAS (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의 개발에 따라 발생주의 도입에 대한 예측이 좀 더 불명확해짐에도, 향후 5년 동안 발생주의 도입 국가의 숫자가 현재의 두 배인 24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023까지 IPSAS 활용 및 영향력이 증가할 예정인데, 발생주의 보고 여부와 관계 없이 전 세계적으로 IPSAS를 활용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IPSAS를 직접적(31개국) 또는 간접적(14개국)으로 도입하는 국가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다. 발생주의 개혁의 필수 요소

발생주의 개혁의 필수 요소는 두 가지(‘조직화된 계획’과 ‘지속적인 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조직화된 계획’을 위해서는 공공재무관리 개혁에 대한 정치적 헌신, 주요 조력자들(국제/지역기구, 기준 제정자, 회계 전문가조직 등)의 협력과 지역적 환경(정부의 구조, 회계기능의 중앙집권화, 지역적 이슈, IT 인프라, 회계실체별 보고 또는 연결실체 보고)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요소인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빈번하고 명확한 의사소통, 관리 프로그램의 변경(정기적인 피드백 포함), 훈련 및 역량 강화, 준비(구체적인 계획)와 이행(적절한 시기의 법적 변화) 등이 필요하다.

라. 발생주의의 미래(발생주의 예산)

발생주의 재무보고 체제하에 생성된 고품질의 발생주의 정보가 발생주의 예산으로 향하는 디딤돌이라고 해도, 발생주의 예산이 불가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발생주의 보고를 이미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발생주의 재무보고가 정부의 자원관리 능력을 보여주고 건전한 공공재무관리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현재 15개 국가만이 발생주의에 따른 예산서를 작성하고 있다. 본 Index만으로는 발생주의 예산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발생주의 예산에 대한 리서치가 향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방안 위탁연구 최종보고회 결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외부 연구진에 위탁과제로 발주한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방안’에 대한 최종보고회 결과 내용을 수록함

□ 회의 개요

- (제목)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방안에 대한 연구
- (일시) 2018년 11월 26일(월) 13:30~15:30
- (장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내 중회의실

□ 참석자

- (연구진) 조형태 교수(홍익대학교)
-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 외 센터 구성원
- (토론자) 정아름 박사(감사연구원), 소광문 사무관(기획재정부)

가. 최종보고 발표 요약(조형태 교수)

□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필요성

- 2011회계연도 발생주의-복식부기 시스템 도입 당시 해당 시스템은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현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건전성 등에 대한 유용한 재정정보를 생산함으로써, 성과평가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국가재정의 지속적, 체계적 관리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정부 분야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가 결산에 대한 현황 제시정보로만 활용되고 있고, 국가 재정활동을 위한 분석 및 의사결정 지원 수단으로서 추가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음
- 이는 국가회계가 결산회계와 예산회계의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결산회계 정보가 예산 회계에 활용되지 않기 때문임

- 즉 예산회계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 발생주의-복식부기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환류(feedback loop)되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
- 이에 예산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를 도입하는 목적의 일환으로 예산에 기초한 추정재무제표 작성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해외 주요국, 국내 공공기업, 공기업, 민간기업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에 기반한 추정재무제표 작성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활용하여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방법 및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
 - 이를 통해 예산회계와 결산회계가 보다 일관되게 정비되고,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장점인 자산 부채의 종합적 관리, 성과 측정을 위한 순원가 정보 제공 등을 예산회계 분야에서도 구현하고자 함

□ 국가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유용성

- ① 국가의 재정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추정재무제표가 활용될 수 있고, 복식부기-발생주의 시스템 하의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사전적으로 미래의 전반적인 국가 재정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 예산편성, 배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음
 - 현재의 단식부기-현금주의 예산 회계시스템으로는 예산을 집행한 이후 국가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및 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채무보다는 넓은 관점에서 국가부채의 총량을 관리해야 할 필요
 - 실제로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
- ② 결산회계 정보가 예산회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리 역할을 하여 예산 편성 및 배정이 보다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음
 - 결산재무제표의 발생주의 정보인 감가상각, 충당금, 충당부채 등을 감안하여 예산추정재무제표에 반영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세입, 세출 등을 고려할 수 있고, 각 중앙관서 간의 횡단면 비교, 시계열 비교를 통한 예산의 사전 검토도 가능

③ 발생주의 결산회계 정보의 질이 제고될 수 있음

- 현재의 결산회계 자료는 이미 지나간 회계연도의 경제적 사건을 정리한 것으로 치부되어 낮은 관심을 받고 있으나, 추정재무제표의 시작점으로 예산회계에 영향을 준다면 결산회계 정보가 많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주목을 받게 될 것임
- 그렇게 된다면 결산재무제표 작성과 검토에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고, 전기오류 수정 손익과 같은 결산회계 오류의 감소, 실질에 부합한 계정 구분 및 분류, 보다 일관된 추정 방식 등이 적용될 것임

□ 추정재무제표 작성 시 공통점(해외 주요국, 국내 기금, 공기업, 민간기업)

- ①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이러한 추정재무제표가 계정별로 구성되어 실제 결산된 자료와 비교 가능
- ② 추정재무제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다른 자료들이 활용되는데, 해외의 경우 거시적인 경기 변동 및 정부정책, 자본예산이 참고자료가 되고, 국내에서도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수입지출계획서, 손익·자본·자금 예산과 같은 참고자료가 활용
- ③ 지출계획에서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유무형자산의 투자지출계획(또는 자본예산)이 정해져 감가상각비와 같은 발생주의 고정비를 미리 계산할 수 있음
- ④ 추정손익계산서가 작성이 되고 난 이후 추정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비현금거래 발생액 항목도 반영 가능

□ 추정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시스템적 개선방안

-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총지출에 손익예산과 자본예산이 구분
- ② 예산과목과 재무회계 계정과목의 매핑(mapping)을 활용한 자동 분개를 위해 단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준에서의 매핑 작업이 필요하며 적어도 '목' 수준의 예산과목과 재무회계계정 과목의 연계가 필요
- ③ 비현금 항목으로 추정해야 하는 경우, 추정 항목에 대한 보다 준거성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

□ 추정재무제표 작성 시 한계점

- 시스템적 개선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추정재무제표를 예산의 부속서류인 참고자료 수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임
 - 결산 확정과 예산 확정의 일정, 추정재무제표의 작성 업무 범위, 국회 각 상임위별 예산심의 문제 등으로 인해 추정재무제표가 단기적으로 예산 배정의 근거가 되는 구속력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 어려움

나. 토론 내용

□ 정아름(감사연구원 박사)

- ① 결산정보 환류 측면과 복식부기 결산정보 활용성 측면에서 '추정재무제표'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
 -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제표는 도입된 지 상당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요성·활용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함이 제기되고 있음
- ② 해외 예산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대부분 '성과관리와의 연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국가 재정 관리와 성과제고 수단으로서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음
 - 특히, SOC 사업과 같이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사업 또는 분야에 도입할 경우, 성과평가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
- ③ 하지만 현재 발생주의·복식부기 결산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높게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입 목적 및 유용성 또는 필요성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광문(기획재정부 사무관)

- ① 이번 추정재무제표에 대한 연구는 추정재무제표의 효과뿐만 아니라 작성을 위한 준비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국내외 사례, 시스템 조직 내부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작성방법에 대해 현실적으로 분석하였음

- ② 다만,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는 효과 중에서 결산서의 짧은 작성기간 및 현금주의 방법 등의 현실적인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 개발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임
- 특히,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추정재무제표가 제공하는 효과에 대해 좀 더 설득력 있게 기술할 필요가 있음

3 연금충당부채 주요국(해외) 사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 수행한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사례 조사'를 요약하여 수록함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국가부채 총액이 1,555.8조원에 달하면서 매년 증가(2016회계연도 대비 122.7조원)하는 국가부채 규모에 대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국가부채의 54.4% 이상을 차지하는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2017회계연도 현재 845.8조원으로 작년 대비 93.2조원이 증가하여, 공무원 증원정책이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무원·군인연금충당부채는 장기간(80여년) 추계정보임에 따라 할인율 등 가정 변경에 따른 민감도가 커 국가재정건전성 판단에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 실제로 2016회계연도 대비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2조원 중 57조원은 할인율 인하여 따른 금액으로 직접적인 재정건전성 악화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와 불필요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보도자료 발표 등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연금충당부채의 인식 및 표시와 관련한 근본적인 검토를 위하여 OECD 발생주의 도입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측정 및 표시에 관한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나. 조사 대상 및 내용

발생주의를 도입한 OECD 25개국의 외부 공시된 국가 결산서(재무제표 및 주석) 및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연금충당부채 산출 여부에 따라 조사 내용을 선정하였다. 2016 OECD Survey 기준 OECD 35개국 중 25개국이 발생주의를 도입하였고, 이 중 15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다.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표시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등 11개국으로 조사되었으나 스위스가 2017년 재무제표 인식하여 12개국으로 증가하였다. 주석에만 표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3개국이며,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지 않는 국가는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덴마크, 멕시코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은 일본, 폴란드, 헝가리 등 10개국이다.

〈OECD 국가별 연금충당부채 인식 현황〉

| 연금충당부채 | | 국가 | 비고 |
|--------|----------------|--|------|
| 산출 |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 표시 |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스위스 | 12개국 |
| | 주석 표시 |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 3개국 |
| 미산출 | | 터키, 칠레, 스페인, 벨기에, 체코, 덴마크, 멕시코 | 7개국 |
| 무응답 | | 일본, 폴란드, 헝가리 | 3개국 |

출처: OECD countries-Results of the 2016 OECD Accruals Survey 및 직접 조사하여 작성

2016 OECD Survey 기준 OECD 35개국 중 발생주의 도입 25개국을 대상으로 외부 공시된 결산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여부, 할인율 적용 방식, 포함 범위(지방공무원 포함 여부) 및 재정운영 방식을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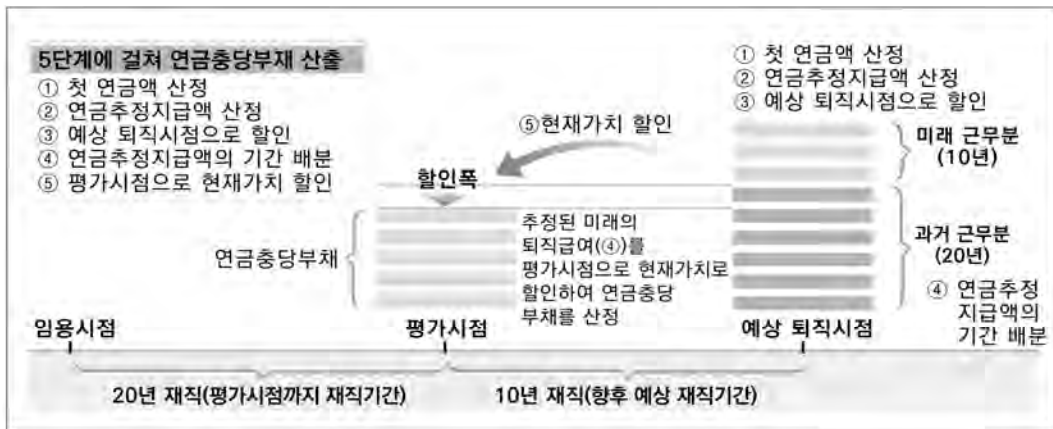
다. 한국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현황

1) 국가회계의 연금 회계처리지침

공무원·군인연금은 근로를 제공한 공무원·군인에 대해 퇴직 시 지급해야 할 급여액이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DB)' 퇴직제도이며, 「연금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령, 이하 '지침')에 따라 '연금충당부채'로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인식하고 있다. 보험수리적 기법을 이용하

여 연금추정지급액(Present Value of Future Benefits: PVFB)을 산출하고 과거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귀속률을 적용하는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출 개요〉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적의 가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되며, 인구통계적 가정은 퇴직률, 연금가입자·연금수급자와 그 유족의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 유족연금승계율, 승급률 등이 있고 재무적 가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할인율,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등이 있다.

2)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및 주석 공시 현황

우리나라는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부채로 표시하며 동시에 주석으로 공시하고 있으며, '09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라 2011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매년 산정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장기충당부채로 재정상태표 본문에 부채로 표시하며 2017회계연도는 845.8조원으로 국가 총부채의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과 군인연금으로 구분되며 공무원연금의 비중이 80%를 초과한다.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재무제표 인식 현황〉

(단위: 조원, %)

| 구분 | FY2013 | FY2014 | FY2015 | FY2016 | FY2017 |
|------------|---------|---------|---------|---------|---------|
| 총부채(A) | 1,117.9 | 1,212.8 | 1,285.2 | 1,433.1 | 1,555.8 |
| 연금충당부채(B) | 596.3 | 643.6 | 659.9 | 752.6 | 845.8 |
| 비중(B/A) | 53.3 | 53.1 | 51.3 | 52.5 | 54.4 |
| 연금충당부채 증가율 | 19.1 | 7.9 | 2.5 | 14.0 | 12.4 |
| 공무원 | 484.4 | 523.8 | 531.8 | 600.5 | 675.3 |
| 군인 | 111.9 | 119.8 | 128.1 | 152.1 | 170.5 |

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III. 장기충당부채-2. 연금충당부채 참고

2017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의 증감을 분석해 보면 연금비용(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과 보험수리적 손익으로 구분되며, 보험수리적 손익은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의 증감을 말하며 이로 인한 비중은 2017회계연도 총증감액 중 63.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연금충당부채 증감액 중 가정 변경 비중〉

(단위: 조원, %)

| 구분 | FY2013 | FY2014 | FY2015 | FY2016 | FY2017 |
|----------|-----------|-----------|-----------|-----------|-----------|
| 연금충당부채 | 596.3 | 643.6 | 659.9 | 752.6 | 845.8 |
| 증감액 | - | 47.3 | 16.3 | 92.7 | 93.2 |
| 연금비용 | - | 29.6 | △21.4 | 30.4 | 33.9 |
| 보험수리적 손익 | - | 17.7 | 37.7 | 62.3 | 59.3 |
| 가정 변경 비중 | - | 37.4 | 63.8 | 67.2 | 63.6 |
| 할인율 | 3.79~4.76 | 3.65~4.61 | 3.42~4.40 | 3.09~4.04 | 2.73~3.73 |
| 할인율 변동 | - | 약 △0.14 | 약 △0.22 | 약 △0.34 | 약 △0.32 |

출처: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보고서 III. 장기충당부채-2. 연금충당부채 참고

3)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현황

연금충당부채는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할인율(기획재정부장관 제시)은 매우 중요한 보험수리적 가정 중 하나이며, 지침 적용 대상이 되는 연금사업 간에 서로 일치하여야 하고,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한다(문단 12.(1)). 할인율은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공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할인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제외한 보험수리적 위험, 투자 위험 및 국가회계 실체 고유의 신용 위험은 반영하지 않는다. 예상 지급시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국공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문단 12.(3)). 예상 지급시기에 상응하는 국공채 만기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하고, 없는 경우 보간법²⁾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한다.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과거 10년 평균(2008~2017년)을 적용한다. 연금 급여의 예상 지급시기가 20년을 초과할 경우 20년 만기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연금충당부채 할인율 관련 주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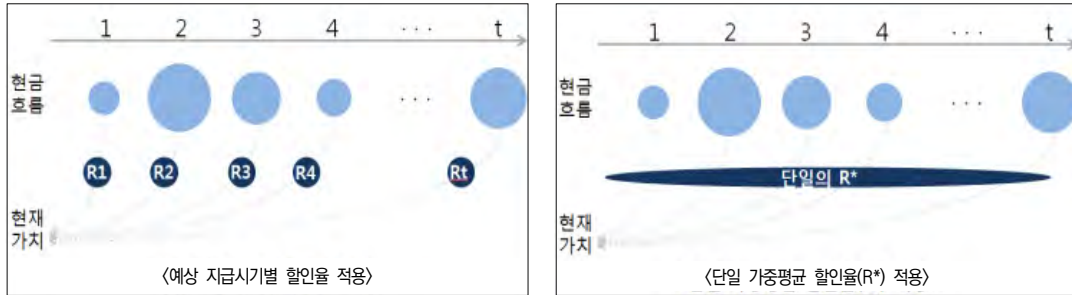
| 구분 |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IPSAS 등) | 현행 국가회계 |
|-------------|--|--------------------|
| 할인율 종류 | 우량 회사채 또는 국공채 | 국공채 |
| 예상 지급 시기 고려 | 예상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택일 | 지급시기별 할인율 (복수 할인율) |
| | ① 원칙: 지급시기별 복수 할인율(multiple rates) ② 허용: 가중평균 단일 할인율(single rate) | |
| 할인율 시점 | 보고기간 말 할인율 | 과거 10년 평균 |
| 최장만기 이후 | 추정 수익률 곡선 | 국고채 20년 만기 사용 |

가) 개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의 비교

단일 가중평균할인율은 미래 예상 퇴직연금 흐름(현재까지 근속으로 배분된)을 개별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차이가 없도록 하는 단일의 할인율을 말한다. 개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은 모두 지급시기 및 금액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어떤 방식의 할인율을 적용하더라도 이로 인한 금액 차이는 없다. 이는 할인율이 표시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개별 할인율은 예상 지급시기별로 복수의 할인율이 표시되어 활용이 불편하므로,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을 산출하여 이자원가, 보험수리적 손익 중 할인율로 인한 변동금액 등을 연단위로 용이하게 산출하고, 외부 공시를 편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보간법: 주어진 값 사이에 측정되지 않는 임의의 값을 구해야 할 경우 주어진 값을 함수로 활용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과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나) 과거 10년 평균 할인율

연금충당부채 산출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국공채 수익률의 과거 10년 평균(2008~2017년)을 적용 하는데, 할인율이 연금충당부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을 참조하여 그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할인율 자문회의(2011)'에서 결정하였다.

〈10년 평균, 보간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예상 지급시기별 할인율〉

(단위: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0년 평균 | 국공채만기 | 2017 할인율 | | |
|------|------|--------|------|------|------|------|------|------|------|-----------|-------|-------------|------|------|
| 5.12 | 2.91 | 2.95 | 3.42 | 3.12 | 2.66 | 2.44 | 1.7 | 1.43 | 1.54 | 2.73 | 1년 | 2018 | 2.73 | |
| | | | | | | | | | | | 2년 | 2019 | 2.87 | |
| 5.27 | 4.04 | 3.72 | 3.62 | 3.13 | 2.79 | 2.59 | 1.8 | 1.44 | 1.8 | 3.02 | 3년 | 2020 | 3.02 | |
| | | | | | | | | | | | 4년 | 2021 | 3.15 | |
| 5.36 | 4.64 | 4.31 | 3.9 | 3.24 | 3 | 2.84 | 1.98 | 1.53 | 2 | 3.28 | 5년 | 2022 | 3.28 | |
| | | | | | | | | | | | 6년 | 2023 | 3.34 | |
| | | 보간법 적용 | | | | | | | | | | 7년 | 2024 | 3.41 |
| | | | | | | | | | | | 8년 | 2025 | 3.47 | |
| | | | | | | | | | | | 9년 | 2026 | 3.53 | |
| 5.57 | 5.17 | 4.77 | 4.2 | 3.45 | 3.28 | 3.19 | 2.31 | 1.75 | 2.28 | 3.6 | 10년 | 2027 | 3.60 | |
| | | | | | | | | | | | 11년 | 2028 | 3.61 | |
| | | | | | | | | | | | 12년 | 2029 | 3.62 | |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0년 평균 | 국공채만기 | | 2017 할인율 | |
|-----|------|-------------|------|------|------|------|------|------|------|-----------|-------|------|-------------|------|
| | | | | | | | | | | | 13년 | 2030 | 3.64 | |
| | | | | | | | | | | | 14년 | 2031 | 3.65 | |
| | | 보간법 적용 | | | | | | | | | | 15년 | 2032 | 3.66 |
| | | | | | | | | | | | 16년 | 2033 | 3.68 | |
| | | | | | | | | | | | 17년 | 2034 | 3.69 | |
| | | | | | | | | | | | 18년 | 2035 | 3.70 | |
| | | | | | | | | | | | 19년 | 2036 | 3.72 | |
| 5.6 | 5.39 | 4.98 | 4.34 | 3.53 | 3.46 | 3.38 | 2.48 | 1.82 | 2.33 | 3.73 | 20년 | 2037 | 3.73 | |
| | | | | | | | | | | | 21년 | 2038 | 3.73 | |
| | | | | | | | | | | | 22년 | 2039 | 3.73 | |
| | | | | | | | | | | | 23년 | 2040 | 3.73 | |
| | | | | | | | | | | | 33년 | 2050 | 3.73 | |
| | | 20년만기 적용 유지 | | | | | | | | | | 43년 | 2060 | 3.73 |
| | | | | | | | | | | | 53년 | 2070 | 3.73 | |
| | | | | | | | | | | | 63년 | 2080 | 3.73 | |
| | | | | | | | | | | | 73년 | 2090 | 3.73 | |
| | | | | | | | | | | | 83년 | 2100 | 3.73 | |

4) 포괄 범위(지방직 공무원 포함 여부)

현재 중앙정부 국가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연금충당부채'에는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도 포함되며, 현재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정규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위원회 전임직원 등) 등이 포함된다. 공무원연금기금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한 '국가회계실체'로서 국가재무제표 통합 대상이며, 공무원연금기금은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을 모두 포함한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고 국가재무제표 본문에 계상된다.

이로 인하여 국가재무제표상 지자체 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재무제표 작성 범위인 중앙정부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중앙정부의 부채의 과대평가가 우려된다. 해외 국가들(미

국, 캐나다, 뉴질랜드)도 지자체의 공무원 연금충당부채를 분리·공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라. OECD 발생주의 도입 25개국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현황

OECD 25개국의 외부 공시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여부, 할인율 적용 방식, 포함 범위(지방공무원 포함 여부) 및 재정운영 방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발생주의 도입 25개국의 연금충당부채 인식 현황〉

| 구분 | |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 | | | | | | |
|----|---------------------|---------------|------------|-----------------------|--------|----------|-------|---------|-------|
| | | 1. 인식 및 표시 | 2. 측정(할인율) | | | 3. 재정 범위 | | 4. 연금제도 | |
| | | | 국공채 | 예상 지급시기 ¹⁾ | 과거 평균 | 재무제표 | 연금 범위 | DB | 재정방식 |
| 1 | 한국 | B/S | ○ | ○ (개별) | 10년 | 중양 | 중양+지방 | ○ | 부과 |
| 2 | 미국 | B/S | ○ | ○ (단일가중) | 10년 | 중양 | 중양 | ○ | 부과/적립 |
| 3 | 캐나다 | B/S | ○ | ○ (단일가중) | 20년 | 중양 | 중양 | ○ | 부과/적립 |
| 4 | 영국 | B/S | 회사채 | ○ (단일가중) | 보고기간 말 | 중양+지방 | 중양+지방 | ○ | 부과/적립 |
| 5 | 호주 | B/S | ○ | ○ (단일가중) | 보고기간 말 | 중양 | 중양 | ○ | 부과/적립 |
| 6 | 뉴질랜드 | B/S | ○ | ○ (개별) | 보고기간 말 | 중양 | 중양 | ○ | 적립 |
| 7 | 스위스 | B/S | ○ | ○ (단일가중) | 보고기간 말 | 중양 | 중양 | ○ | 적립 |
| 8 | 아이슬란드 | B/S | - | - | - | - | - | ○ | - |
| 9 | 스웨덴 | B/S | - | - | - | - | - | ○ | - |
| 10 | 에스토니아 | B/S | - | - | - | - | - | ○ | - |
| 11 | 슬로바키아 | B/S | - | - | - | - | - | ○ | - |
| 12 | 이스라엘 | B/S | - | - | - | - | - | ○ | - |
| 13 | 프랑스 | 주석 | ○ | ○ (단일가중) | 보고기간 말 | 중양 | 중양 | ○ | 부과 |
| 14 | 오스트리아 ²⁾ | 주석 | - | - | - | 중양 | 중양 | ○ | - |
| 15 | 핀란드 | 주석 | - | - | - | 중양 | 중양 | ○ | - |
| 16 | 터키 | × | - | - | - | - | - | | |
| 17 | 칠레 | × | - | - | - | - | - | | |
| 18 | 스페인 | × | - | - | - | - | - | | |

| 구분 | |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 | | | | | | | |
|----|------------------|---------------|------------|-----------------------|-------|----------|-------|---------|------|
| | | 1. 인식 및 표시 | 2. 측정(할인율) | | | 3. 재정 범위 | | 4. 연금제도 | |
| | | | 국공채 | 예상 지급시기 ¹⁾ | 과거 평균 | 재무제표 | 연금 범위 | DB | 재정방식 |
| 19 | 덴마크 | × | - | - | - | - | | | |
| 20 | 체코 ³⁾ | × | - | - | - | - | | | |
| 21 | 벨기에 | × | - | - | - | - | | | |
| 22 | 멕시코 | × | - | - | - | - | | | |
| 23 | 일본 | 미답변 | - | - | - | - | | | |
| 24 | 폴란드 | 미답변 | - | - | - | - | | | |
| 25 | 헝가리 | 미답변 | - | - | - | - | | | |

주: 1) 예상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할인율 적용 시 '개별 할인율'이 원칙이며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도 허용함. 형식상의 차이만 존재

2) 오스트리아: 2013년 개시재무제표만 외부 공시됨

3) 체코: 재무정보가 통계형식으로 재무적 수치에 한하여 외부 공시(주석정보는 공시되지 않음)

15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국에서 재무제표 본문에 연금충당부채를 표시하고 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는 주석으로만 기재하고 있다. 할인율은 대다수 국가가 국공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우량 회사채를 적용하고 있다. 예상 지급시기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할인율의 형태는 개별 할인율 형태와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형태를 적용한다. 개별 할인율을 사용하는 국가는 한국과 뉴질랜드이며,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형태를 사용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스위스 등이 있다.

재정 범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범위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펴본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이 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가 동일하였다.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하는 연금제도는 확정급여제도(Defined Benefit: DB)이며 재정방식은 부과방식과 적립방식이 혼용되어 다양하게 나타났다.

1)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에 인식하는 국가의 연금충당부채 현황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 및 주석에 인식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

나다, 아이슬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스위스 등 총 12개국으로 이 중 스위스는 2017년부터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하였다.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는 12개국의 연금충당부채 산출금액, GDP 대비 비중, 총부채 대비 비중, 할인율 범위, 연금충당부채 금액 중 보험수리적 손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 표와 같다.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는 12개국의 연금충당부채 관련 현황〉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연금충당부채 | GDP ¹⁾ 대비 | 총부채 대비 | 할인율 | 보험수리적 손익 비중 |
|--------------------------------|---------|---------|------------------|----------------------|--------|----------|-------------|
| 1 한국(조원) 2017.12.31. | 2,063.2 | 1,555.8 | 845.8 | 51.7% | 54.4% | 2.7~3.7% | 63.6% |
| 2 미국(biUSD) 2017.9.30. | 3,481 | 23,897 | 7,700 | 42.7% | 32.2% | 3.6~4.0% | 51.4% |
| 3 영국(biGBP) 2016.3.31. | 1,742 | 3,728 | 1,425 | 69.9% | 38.2% | 2.4~5.7% | 53.3% |
| 4 호주(biAUD) 2017.6.30. | 642 | 1,034 | 301 | 17.2% | 29.1% | 3.60% | 69.7% |
| 5 뉴질랜드(biNZD) 2017.6.30. | 314 | 197 | 11 ²⁾ | 4.1% | 5.6% | 3.0~4.5% | 61.9% |
| 6 캐나다(biCAD) 2017.3.31. | 465 | 1,060 | 245 | 12.1% | 23.1% | 2.4~4.8% | 30.1% |
| 7 스위스(biCHF) 2017.12.31. | 352 | 285 | 18 | 2.7% | 6.3% | 0.3~0.7% | 확인 필요 |
| 8 아이슬란드(biISK) 2016.12.31. | 1,140 | 1,835 | 611 | 24.9% | 33.3% | 미공시 | 미공시 |
| 9 스웨덴(biSEK) 2016.12.31. | 1,602 | 1,838 | 233 | 5.3% | 12.7% | 미공시 | 미공시 |
| 10 에스토니아(biEUR) 2016.12.31. | 16 | 7 | 2 | 9.9% | 28.6% | 미공시 | 미공시 |
| 11 슬로바키아(biEUR) 2016.12.31. | 44 | 76 | 21 | 25.4% | 27.6% | 미공시 | 미공시 |
| 12 이스라엘(biILS) 2016.12.31. | 549 | 2,424 | 690 | 56.6% | 28.5% | 미공시 | 미공시 |

주: 1) 2016년 GDP 기준(OECD)

2) 1992년 7월 제도(GSF) 종료에 따라 이전 제도 가입자 대상으로 산정

2) 연금충당부채를 주석으로만 표시하는 국가(3개국)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본문에 기재하지 않고, 주석에만 공시하는 국가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3개국이며 주석으로 공시되는 연금충당부채 정보는 다음과 같다.

〈연금충당부채 주석 표시 국가의 변동 내역〉

| 구분 | 총자산 | 총부채 | 연금충당부채 | GDP 대비 | 총부채 대비 | 할인율 |
|-----------------------------|--------|---------|--------|--------|--------|--------|
| 1 프랑스(biEUR) 2017.12.31. | 978 | 2,181 | 2,352 | 51.9% | 105.5% | -0.49% |
| 2 오스트리아(biEUR) 2013.1.1. | 89,509 | 223,382 | 507 | 0.14% | 0.23% | 확인 불가 |
| 3 핀란드(biEUR) 2017.12.31. | 56,700 | 115,683 | 74,116 | 34.35% | 64.07% | 2.70% |



| 국가명 | 본문에 인식하지 않고 주석에만 표시한 이유 |
|---------------|---|
| 프랑스 | ① 부과방식의 부채인식 문제 ② 유럽 내 비교 가능성 문제 ③ 사회정책 의무에 대한 기준 부재: IPSAS 등에 명시적 기준이 부재함 (공무원연금 역시 국가의 특수한 사회정책의 일종) |
| 오스트리아, 핀란드 | ○ 주석 기재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음 |

3) 주요국의 할인율 관련 현황 비교 분석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주석정보를 바탕으로 ① 할인율 종류(국공채 수익률 적용 여부), ② 예상 지급시기와 상응하는 유사만기 고려 여부, ③ 평균 할인율 적용 여부, ④ 최장만기 초과 시 적용 할인율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요국의 연금총당부채 할인율 관련 현황 비교〉

| 구분 | 자국 회계기준 | | | IFRS or IPSAS | | |
|---------------|-------------|-----------------------------|-------------|---------------|-------------|-------------|
| | 한국 | 미국 ¹⁾ |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 ① 할인율 종류 | 국공채 | 국공채 | 국공채 | 우량회사채 수익률 | 국공채 | 국공채 |
| ② 예상 지급시기 | 고려 | 고려 | 고려 | 고려 | 고려 | 고려 |
| 표시 형태 | 지급시기별 할인율 |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 단일가중평균 할인율 | 지급시기별 할인율 |
| 특정 시점 단일물장기물 | × (지급시기 고려) | × (지급시기 고려) | × (지급시기 고려) | × (지급시기 고려) | × (지급시기 고려) | × (지급시기 고려) |
| ③ 평균할인율 | 10년 평균 | 10년 평균 | 20년 평균 | × (보고기간 말) | × (보고기간 말) | × (보고기간 말) |
| ④ 최장만기 초과 | 20년 국공채 | 100년까지 할인율 추정 ¹⁾ | 할인율 추정 | 할인율 추정 | 할인율 추정 | 할인율 추정 |
| 적용 할인율 (주석정보) | 2.7~3.7% | 3.6~4.0% | 2.4~5.7% | 3.6% | 3.0~4.5% | 2.4~4.8% |

주: 1) 미국의 경우 2014년 이후 할인율 적용방식 개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공채 수익률을 적용하고, 영국은 우량 회사채 수익률을 적용하며,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주요국 모두 예상 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공채 또는 회사채 만기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예상 지급시기와 무관한 특정 시점의 단일 할인율을 사용하는 국가는 없었다. 예상 지급시기를 고려하는 경우 선택 가능한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급시기별로 할인율을 직접 현금 흐름에 적용하는 방식과 이와 동일한 현재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단일의 가중평균 할인율'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보고기간 말 현재 수익률을 적용하는 국가와 과거 평균수익률을 적용하는 국가가 모두 존재하였다. 보고기간 말 할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였으며, 평균할인율은 한국(10년), 미국(10년), 캐나다(20년)이다. 최장만기를 초과하는 경우 주요국 대부분이 수익률곡선상의 현행 수익률을 예상 지급시기까지 확장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였다.

4) OECD 주요국의 재무제표의 포괄 범위 및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 비교

연금충당부채를 재무제표 및 주석에 인식하고 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주석정보를 바탕으로 ① 국가 결산서의 포괄 범위, ② 연금충당부채의 포괄 범위, ③ 연금충당부채 계상 급여 종류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지방정보를 제외한 국가 결산서를 공시하며, 영국과 호주는 지방정부를 통합하여 국가 결산서를 공시한다. 미국,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를 중앙정부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국, 영국 및 호주는 지방정부를 포함하여 연금충당부채를 공시하고 있다. 주요국 모두 국가 결산서의 포괄 범위와 연금충당부채의 포괄 범위가 일치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 결산서의 포괄 범위는 중앙정부에 한정되어 있으나, 연금충당부채는 지방직을 포함하고 있어 불일치 상태이다.

〈주요국의 포괄 범위 관련 현황 비교〉

| 구분 | 자국 회계기준 | | | IFRS or IPSAS | | |
|--------------------|--------------------|--------------------|------------------|------------------------------------|------------------|-----------------|
| | 한국 | 미국 | 캐나다 | 영국 | 호주 | 뉴질랜드 |
| ① 국가 결산서 포괄 범위 | 중앙 | 중앙 (연방정부) | 중앙 | 중앙/지방 | 중앙 | 중앙 |
| ② 연금충당부채 포괄 범위(금액) | 중앙+지방 (845.8조원) | 중앙 (7,700biUSD) | 중앙 (245biCAD) | 중앙/지방 (1,320biGBP /105biGBP) | 중앙 (301biAUD) | 중앙 (11biNZD) |
| ①, ② 일치 여부 | 불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일치 |

마. 결론

OECD 25개국의 외부 공시된 결산 보고서를 중심으로 연금충당부채 인식 및 표시 여부, 할인율 적용 방식, 포함 범위(지방공무원 포함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개국이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 중 12개국에서 재무제표 본문에 연금충당부채를 표시하고 있고,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에서는 주석으로만 기재하고 있다. 할인율은 대다수 국가가 국공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영국의 경우 우량 회사채를 적용하고 있다. 조사된 모든 국가가 예상 지급시기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며, 개별 할인율 형태와 단일 가중평균 할인율 형태가 모두 확인되었다. 재정 범위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범위와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는 범위가 일치하는지 살펴본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국가

대부분이 재무제표 작성 범위와 연금충당부채 인식 범위가 동일하였다. 한국의 연금충당부채 산출 기준 및 산출 현황은 국제적 비교 결과, 국제적 정합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거평균 할인을 적용과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연금충당부채를 표시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06

센터 동향

1 제24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제24차 국가회계자문위원회를 12월 14일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는 국가회계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회계센터 내의 자문기구를 말한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의 주재로 정부위원 1인과 민간전문위원 6인이 참여하여 국가회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신규(재) 위촉,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현황 및 2019년 주요 사업계획이 보고되었다.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로서 국가회계 제도개선 및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업무와 IPSASB 업무, 공적연금 관련 기본과제와 위탁과제, 자체과제, 『2018 알기 쉬운 국가회계』 및 분기별 뉴스레터 발간, 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연구확산 세미나 개최, 국가회계교육사업과 국가 재무결산 업무, 국가회계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교육교재 개발, 그리고 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 및 참가 등이 보고되었다. 2019년에는 국민연금 및 공무원/군인 연금, 국가 결산보고서 개편, 국가회계제도 개선 이월과제 및 검토과제가 수행될 것으로 보고하였다. 자문위원은 연금충당부채의 범위, 정보 제공의 다원화 및 해외 사례 조사 등의 자문을 제공하였다. 또한 전기오류 수정 관련 누락된 국유재산과 dBrain상의 세분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결산교육의 목표 달성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안건인 사용수익권 평가와 용자회계처리지침 개선방안은 서면으로 보고되었다.



〈국가회계자문위원회(12.14),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2 2018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센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12월 28일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 정책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기구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센터소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센터 정책사업을 평가하고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에는 이장희 교수(충북대학교),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혁대 교수(목원대학교) 등 외부위원 3인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정도진 소장이 평가위원으로 참석하여 '18년 사업 실적에 대해 위원별 개별평가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96.5점으로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며 '17년 95.2점 대비 1.3점 증가하였다.

'18년도 사업성과 중 사업성과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추가하여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 지속가능한 공동연구수행을 위해 유관부처와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 강화, 재정관리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기준 및 예규 제정과 기관별 수요조사 및 연구를 통해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기준 개정(안) 마련, 감사원 지적금액 최저 수준 달성으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우수하게 평가 받았다.

또한 계량지표인 국가 결산보고서 등 보고서의 기한 내 제출, 국가회계전문교육 만족도 및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연구과제 발표 건수 계량지표는 모두 목표를 달성하였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18년도 사업추진 평가 결과를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정책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3 2018년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최종보고심의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연구개발적립금과제(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 개발) 최종보고심의회를 11월 9일 대우재단빌딩에서 개최하였다. 최종보고심의회는 정도진 소장의 연구진행 결과 보고에 이어 외부 심의위원인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아영 교수(강원대학교)와 원내 심의위원인 박한준 연구위원, 하세정 연구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는 최종보고심의회 평가의견 및 외부평가 의견을 보완하여 본 연구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최종보고심의회(11.9), 대우재단빌딩 회의실〉

〈최종보고심의회 위원진 토론 내용 요약〉

[전중열 교수, 서울과기대] 본 연구에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대표하는 요인으로 제시한 사회적 가치와 경영위기 간의 논리적 연계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함. 또한 사회적 가치 설문조사의 통계적 분석 결과 및 기관의 사회성과 측정 결과의 객관성을 요구하였으며, 기관마다 별도의 경영위기 조기경보지표가 아닌 공통적인 비율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함

[이아영 교수, 강원대] 경영위기 조기경보지표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을 활동별로 범주화하여 공통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또한 기관이 자의적으로 제시한 사회성과 측정치가 재무제표에 인식된 것이 아닐 경우, 부외 사회적 자산·부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제기함

[박한준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으로, 사회적 가치와 경영위기를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의 필요성을 본문에 보다 명확히 제시할 것을 강조함. 또한 공공기관 본연의 사업과는 별도로 사회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은 보다 명확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며, 이를 사회적 가치 설문 결과 분석을 통해서도 보완할 수 있음을 제시함

[하세정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회적 가치 범주 외로 공공기관이 민간의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회적 가치임을 강조함. 또한 기관별 사회성과 측정을 위한 적격 평가 시 제시한 판단 기준의 적절성을 보완할 필요성과 조기경보지표 분석 시 과거에 대한 분석이 아닌, 미래에 대한 측정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함

[정도진 소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조기경보지표 개발 및 사회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절차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강조함. 사회적 가치를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공공기관들이 사회적 가치를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본 연구가 할 수 있음을 강조함

4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은 제3차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를 12월 26일(수)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위원장을 포함한 자문위원 7인과 박윤진 팀장을 비롯하여 재정통계 산출업무를 담당하는 팀원 4인이 참석하였다.



〈공공재무통계자문위원회(12.26), 서울지방조달청 아태재정협력센터 중회의실〉

이번 재무통계자문위원회는 올해 2월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것으로서, 2018년 재정통계 산출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4개의 안건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을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국가채무에 국제기준에 따른 ‘순채무’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안, 공공부문의 포괄 범위에 대한 논의를 비롯하여 정보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통계 산출시기를 앞당기는 방안 등 센터에서 산출하는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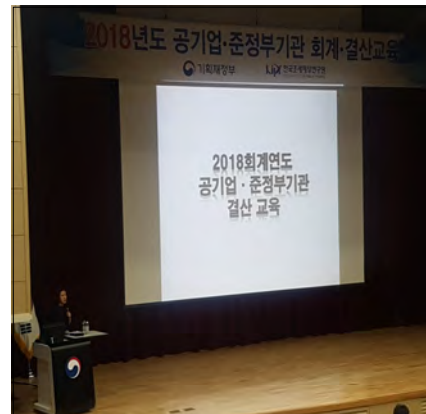
센터에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자문 위원들과도 공유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조를 받기로 하였다.

5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획재정부와 공동으로 12월 19일(수)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 및 결산교육을 실시하였다.

2018년에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128개 기관(공기업 35개, 준정부기관 93개)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본 교육에서는 김민정 회계사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개요 및 절차, 2017회계연도 결산서 검토 결과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방민식 회계사의 K-IFRS 제·개정사항, 주요 회계처리 및 주식 작성 유의 사항 등에 대해 강의가 이뤄졌다. 강의 후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결산 담당자들의 실무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되었다.



07 세미나

1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공동 주최

국가회계 분야 연구성과물 확산 및 전문가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는 '2018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를 '한국정부회계학회'와 공동 주최함

가. 개요

- 1) 일시: '18.12.7(수) 13:00~18:30
- 2)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2층 강당
- 3) 주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4) 후원: 한국경제신문,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제 발표 및 토론〉

[사회] 이상열 교수(한양대학교)

[세션 1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발표1] '18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소개
(한소영 회계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2] IPSASB 최근 경향 및 주요 이슈
(이남주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3]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현지용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4] 공익법인회계/유치원 회계기준 이슈
(박윤진 팀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2부] 한국정부회계학회 세션

[발표1]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
(엄기중 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토론1]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광화 교수(강원대학교)

[발표2]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
(김봉환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2]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발표3] 벤포드법칙을 이용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 조정행태의 연구
(김동욱 교수, 제주대학교)

[토론3] 안성윤 교수(가톨릭대학교), 강성조 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발표4] 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보고 개선방안: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이계형 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토론4] 정일환 교수(송실대학교), 김응길 교수(송실대학교)

[세션 3부] 라운드테이블

[좌장] 강인재 박사(재정성과연구원)

[발표] 슈퍼예산시대의 국가회계(김이매 교수,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토론] 강태혁 교수(한경대학교), 김경호 교수(홍익대학교), 배득중 교수(연세대학교),
양영철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유병연 부장(한국경제신문)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세션 1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 (발표 1) '18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소개(한소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첫 번째 주제인 「'18년 국가회계기준 제·개정 소개」는 한소영 회계사(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표하였다. '18년 국가회계기준은 프로그램 원가정보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분석 시 활용하기 위하여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 용어의 정의 및 원가 구분을 명확하게 수정하였으며, 새로운 금융상품 분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종자본증권, 투자일임계약, 내재파생상품의 계정 분류 예시를 신설하였다. 또한, 연금충당부채의 국가 간 비교 가능성 및 국가재무제표 자산·부채의 정합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연금충당부채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세분화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 (발표 2) IPSASB 최근 경향 및 주요 이슈(이남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두 번째 주제인 「IPSASB 최근 경향 및 주요 이슈」는 이남주 국가회계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은 최근 수행의무접근법(PSPOA)으로 수익 인식 체계가 변화되면서 수익정보가 수행의무의 이행 정도(성과)와 연계되어 보다 목적 적합한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회계원칙(IPSAS 42, Social Benefits)을 발표할 예정이므로 향후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회계처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발표 3)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현지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세 번째 주제인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는 현지용 결산교육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2017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자산은 2,062.5조원, 부채는 1,555.8조원, 재정운영결과는 21.1조원이며, 재무제표상 자산(부채)과 개별법상 재산(채무) 차이는 포괄 범위, 대상 차이, 측정 기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 (발표 4) 공익법인회계/유치원 회계기준 이슈(박윤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1부 네 번째 주제인 「공익법인회계/유치원 회계기준 이슈」는 박윤진 재정통계팀장(한국조세

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공익법인의 경우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있으나 외부감사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이 많아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국제청의 인력 부족으로 공시 내용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무공시 제외 기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외부감사 확대를 통한 회계정보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의 회계규정에 대한 법 규정 미비로 부정 사건이 발생한 것일 수 있으므로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부의 검토 또는 인증을 받아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세션 2부]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 (발표 1)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엄기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2부 첫 번째 주제인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은 엄기중 연구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전중열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광화 교수(강원대학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중열) 연구에 포함된 모형은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계량평가상 가중치는 자의적인 가중치일 수 있기에 가중치에 대한 논의 검토가 필요하다.

(정광화) 제목의 ‘경영 실적 평가제도의 효과성 검증’은 경영 실적 평가제도 전체의 효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제를 추가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계량지표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 목표 부여(편차) 방법뿐만 아니라 나머지 6가지 방법도 동시에 검증하여 우월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발표 2)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김봉환, 서울대학교)

세션 2부 두 번째 주제인 「불용액의 정권 연차별 변화와 국회 예산심의의 효율성」은 김봉환 교수(서울대학교)가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성환) 모형1과 모형2를 하나의 모형으로 변경하고, 세부사업 단위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구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불용액과 성과 간 관계 확인이 쉽지 않으나, 단위사업 성과 보고서와 연계하여 불용액이 증가하면 성과가 낮아진다는 것을 밝혀보는 연구를 진행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임동완) 추가경정예산 승인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 (발표 3) 벤포드법칙을 이용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 조정행태의 연구(김동욱, 제주대학교)

세션 2부 세 번째 주제인 「벤포드법칙을 이용한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 조정행태의 연구」는 김동욱 교수(제주대학교)가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안성운 교수(가톨릭대학교), 강성조 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성운) 부채를 감소시키면 자산 또는 자본이 변동되므로, 부채 규제 시 규제 대상자들에게서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지 궁금하였고, 자산 재평가 등 실물이익 조정이 괜찮은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첫 번째 자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자리까지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하며, 단계적으로 규제가 변동할 때 벤포드법칙을 따르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강성조) 유형별, 규모별(직영기업, 공사·공단)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 중 직영기업은 지방의회의 통제가 가능하므로 부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낮으나,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경기도시공사 등과 같은 공사·공단은 벤포드법칙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발표 4) 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보고 개선방안: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이계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세션 2부 네 번째 주제인 「지방채 활성화를 위한 재무보고 개선방안: 신용평가 모델을 기반으로」는 이계형 연구원(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 발표하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정일환 교수(송실대학교), 김응길 교수(송실대학교)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일환)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이미 많은 재무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재무의존성 재무지표를 추가하는 등의 보고 개선만으로 지방채가 활성화될지 깊은 고민이 이루어

저야 한다. 또한 현재 지방채 관리자(행정안전부)와 금융시장(한국거래소) 간 지방채의 정의가 불일치하므로 지방채 현황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김응길)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가능성이 높다면 자원조달비용이 낮아지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채권자(수요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2층 강당〉

[세션 3부] 라운드테이블

세션 3부에서는 「슈퍼예산시대의 국가회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좌장 강인재 박사(재정성과연구원)를 중심으로 강태혁 교수(한경대학교), 김경호 교수(홍익대학교), 배득중 교수(연세대학교), 양영철 부장(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남주 팀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유병연 부장(한국경제신문)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토론자의 주요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태혁) 예산은 규모 또는 증가 속도가 아닌 예산 사용 분야에 초점을 맞춰 생각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 대부분의 GDP 대비 예산 규모가 40~50%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현재 예산 규모 470조원은 내년 GDP 1,800조원 대비 30%도 안 되는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뒤에서 4번째

순위에 불과하다. 또한, 재정은 항상 아끼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우리 소득 수준을 고려하면 예산 증가 속도는 빠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산 사용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전체 예산 중 약 40%는 사회복지 예산에 사용되고, SOC 및 R&D의 예산 증가율을 상당히 낮아 경제성장보다는 분배·복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을 목표로 한 일자리 창출 역시 사회복지적 일자리(장애인, 노인, 세터민, 다문화가정)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김경호) 첫째, 초슈퍼예산이라고 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증가하였으나, 14개 분야 중 유일하게 SOC 예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예산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충당부채 인식과 관련하여 정책적 고려가 배제될 수는 없는 상황이나, 연금에 대하여 부채를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은 후퇴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연금충당부채와 관련하여 주식, 필수 보충정보 등에 설명을 보완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기오류는 대부분 의도성이 없는 오류로 국민을 속이거나 하는 것은 아니며, 결산 담당자의 역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이니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업무 비연속성 문제와 정부의 국가회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현재 상황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넷째, 중소기업 및 해외 원조 관련 기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면 기금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 남북협력기금의 대손충당금 설정 예외를 둔 것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실질이 무상원조 성격이므로 설명자료를 통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올해부터 지방회계 대상을 심사하여 시상하게 되었으며, 국가도 서로 경쟁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참고하는 것을 제안한다.

(배득중) 예산과 회계를 연계하는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결산서의 정보 활용이 필요하다. 예산의 경우 예산 규모는 GDP와 연관이 있어 예산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는 상징이며,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한 결산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출 규모에만 관심 있고, 성과와의 연결을 생각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하며, 향후 결산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양영철) 지방자치단체 회계도 국가회계와 동일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에 대한 민간의 불신과 공격을 없애기 위해 원가절감 효율성, 원가의 정확한 산정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도입하였다. 세션 1의 발표 1을 통해 국가회계기준의 비배분비용·비배분수의 관련 개정은 정확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시 재무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국가회계의 노력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회계는 이처럼 정확한 정보를 발생주의 시점으로 보여주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이남주) 국민을 대상으로 눈높이에 맞는 정보, 정책 당국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미확정성, 변동성이 존재하므로 연금충당부채의 증가를 재정건전성 악화론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연금충당부채의 변동성 및 국가직·지방직의 구분정보에 대한 충분한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전기오류의 경우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하위 조직이 많은 부처에서 말소 재산이 정리되지 못해 발생한 건이 많으므로 오류 감소를 위해 국유재산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오류 중 자산 누락으로 인한 부분을 분리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 평가 환류, 공공재정의 알기 쉬운 설명 제공, 재정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으로 재정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유병연) 국민·주민은 국가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에 대해 눈을 떠야 하고, 중앙·지방정부는 국민들이 나라 살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의무이다. 이처럼 알기 쉬운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정부회계의 주요 의무인데, 국민·주민과의 소통에 대해서는 한결음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100~200페이지에 걸쳐 대국민 메시지, 경영진 단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민·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먹구구식의 회계가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회계의 소통과 투명한 회계를 위해 많은 연구와 관심을 요청드린다.



〈2018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12.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기록관 2층 강당〉

2 2018년 한국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국가회계세션 운영

가. 개요

- 1) 일시: '18.12.15(토) 10:00~20:00
- 2) 장소: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415호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주제 1)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전문연구원)

첫 번째 주제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은 진태호 전문연구원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공적연금 정보의 수요에 기초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 지표 개발과 이에 기초한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 및 연금결산보고서의 개선방안으로 구성되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권성국 교수(경북대학교)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발표 내용]

-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 조사 및 수요 조사 등을 실시하여 지표 개발
-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산출한 지표를 분석하고, 정보 이용자의 공적연금 재정안정성의 이해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지표를 포함한 연금보고서 개선방안 제시

[토론: 홍영은(영남대학교)]

- 수요조사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개념을 ‘연금지급 가능 여부’로 정립하기 위한 핵심 자료임
- 분산분석, 회귀분석 등을 통계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분석 필요



〈한국회계학회(12.15),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415호〉

□ (주제 2)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 개발(박성환, 한밭대 교수)

두 번째 주제인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 개발」은 박성환 교수(한밭대학교)가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정보요구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 성과의 측정과 보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권성국 교수(경북대학교)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발표 내용]

-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결산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인식과 측정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성과를 보고하는 방법을 제안

[토론: 김정민(계명대학교)]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을 어떻게 분류할 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 기준이 필요
- 사회적 가치 활동을 화폐가치로 측정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데, 측정도구의 한계로 인해 정보 공시 내용이 제한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할 필요
- 사회적 가치 표시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추진 사업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 등) 금액을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기존의 공공기관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과 연구결과의 차별성을 소개할 필요
- 제3자 검증의견의 도입 여부와 도입된다면, 검증의 주체에 대한 고려 필요



〈한국회계학회(12.15),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415호〉

□ (주제 3)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과 부채 비율 및 이익 조정 간의 관련성 연구
(엄기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 연구원)

세 번째 주제인 「기타공공기관의 회계기준과 부채 비율 및 이익 조정 간의 관련성 연구」는 엄기중 연구원이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현재 의무적용 회계기준이 없는 기타공공기관이 기관마다 다양한

회계규정을 사용함에 따른 영향을 부채 비율 및 이익 조정의 관련성에 따른 분석과 향후 보완점 및 시사점으로 구성되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권성국 교수(경북대학교)가 사회를 맡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발표자 및 토론자의 세부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 발표 내용]

- 기타공공기관 회계기준과 부채 비율, 이익 조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기타공공기관의 자체회계규정 사용은 회계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 따라서 기타공공기관의 관계부처는 자체회계규정 사용 기관을 주의 깊게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정책 당국은 자체회계규정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토론: 안홍복(계명대학교)]

- 기업 규모 변수의 통계치 검토 필요(SIZE 변수의 최댓값 등)
- 단변량 분석(상관관계 분석)과 다변량 분석(회귀분석) 간의 부호와 유의성 차이를 파악하여 보완할 필요



〈한국회계학회(12.15), 경북대학교 국제경상관 415호〉

3 찾아가는 성과확산 세미나

가.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1)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에서는 2018년 기본과제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결산보고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 정보의 수요에 기초하여 현재 시점에서 미래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실제로 적용하여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해당 정보를 결산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금보고서 등 결산보고서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2018년에 진행한 기본과제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학계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지표 개발과정 및 산출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성과확산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직역연금 관계자, 연금학계 및 회계전문가 등 대상자를 구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가) 제1차 성과확산 세미나(18.12.19, 수)

제1차 성과확산 세미나는 서울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12월 19일(수)에 ‘직역연금 재정안정성 평가방안’이라는 소주제로 직역연금 관계자를 모시고 진행하였으며, 토론 및 참석자로는 정해준 사무관(인사혁신처), 박종철 차장(공무원연금공단), 장재영 주무관(국방부), 김수성 부장·주효찬 과장(이상 사학연금공단) 및 김기환 주무관(교육부)이 참여하였다.

국민연금과 성격을 달리 하는 직역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안정성 지표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며, 수입, 지출의 추계 시 정책 방향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직역연금의 성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수렴되었다.



〈제1차 성과확산 세미나(12.19), 서울상공회의소 중회의실〉

나) 제2차 성과확산 세미나('18.12.21, 금)

제2차 성과확산 세미나는 서울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12월 21일(금)에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이라는 소주제로 연금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였다. 토론자로는 권문일 교수(덕성여자대학교), 윤석명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주호 교수(경희대학교) 및 홍백의 교수(서울대학교)가 참여하였다.

4개의 연금에 대하여 각각 기업연금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는 부과방식인지 부분 적립방식인지 등 제도의 특성 및 제도운영방식에 따라 지표가 달리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연금제도가 초장기적인 기간에 운영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규모 위주의 지표보다는 GDP 또는 총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과 비교한 비율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수렴되었다.

다) 제3차 성과확산 세미나('18.12.27, 목)

제3차 성과확산 세미나는 대우재단빌딩 세미나실에서 12월 27일(목)에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평가지표 개발 및 연금보고서 개선방안'이라는 소주제로 회계학계 등 회계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였으며, 토론자로는 이상열 교수(한양대학교), 이정현 본부장·김동원 감리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 송원자 부회장(여성공인회계사회) 및 박상형 공인회계사가 참여하였다.

추계기간이 짧아(2060년까지, 43년) 지표의 개발 방법론적으로는 적절하나, 실제 평가지표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과 함께 과거 사건에 대한 의무를 평가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국가재무제표에 계상하고 있는 연금충당부채가 적절하나,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을 평가한다는 목적으로는 새로운 지표 개발이 필요함에 동의하였으며, 해당 정보를 국가 결산보고서상 주석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수렴되었다.

2)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 통합결산보고서 개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결산보고서를 개발’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연구확산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본 세미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및 실행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기관별 참여 신청을 받아 진행되었다. 현재 SR(11월 29일), 한국남부발전(12월 12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2월 17일) 등의 공공기관에서 개최되었으며, 2019년 1월 중에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일반적인 하향식 위주의 세미나가 아닌 적극적으로 기관과 소통하는 연구 성과확산 세미나로 운영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특강과 질의응답 및 실무진 개별 상담으로 진행되었다. 기관의 사업 특성에 따른 사회적 가치 측정 적용방안에 대한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실무진 개별 상담을 통해 기관의 사회적 가치 측정의 방법론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적립금과제 찾아가는 연구확산 세미나(12.12), 한국남부발전 회의실〉

2018년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출장 후기

이번 출장의 목적은 IPSASB(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가 분기마다 개최하는 정례회의의 참석을 통해 IPSAS의 제·개정에 참여하고, 각국의 공공부문 회계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나라의 국가회계기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가. 출장개요

- 출장기간: 2018.9.17(월)~9.23(일)
- 출장지: 캐나다공인회계사협회(CICA), 캐나다 토론토
- 출장자: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김선재 특수전문직3급
- 안 건: 사회보장급여, 수익·비교환비용, 공공부문 측정, 리스, 전략 및 과업계획 등

〈세부일정〉

| 일자 | 주제 | 내용 | 시간 |
|-------------|--------------|---|---------------|
| 9/18 (화) | 개회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및 참석자 확인 • 과거 회의 결과 및 활동 현황 발표 • EPSAS 업데이트 | 09:00 ~ 09:30 |
| | 커뮤니케이션 활동 보고 | • Marc Wermuth(스위스 위원) 구두 보고 | 09:30 ~ 10:00 |
| | 조직 관리 | • CAG(자문위원회) 구두 보고 | 10:00 ~ 10:30 |
| | 업무계획 보고 | •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 10:30 ~ 10:40 |
| | 사회보장급여 | • 이슈 논의 | 11:00 ~ 12:30 |
| | 사회보장급여(계속) | • 이슈 논의 | 13:30 ~ 15:10 |
| | 비교환비용 | • 이슈 논의(집합적·개인적 서비스 및 재난구호) | 15:30 ~ 17:00 |
| 9/19 (수) | 2018 개선과제 | • 최종 기준서 승인 | 09:00 ~ 10:00 |
| | 비교환비용(계속) | • 이슈 논의(공공부문 수행의무 접근법) | 10:00 ~ 10:40 |
| | 공공부문 측정 | • 이슈 논의(전략적 접근법 및 산출물) | 11:00 ~ 12:30 |
| | 공공부문 측정 | • 이슈 논의(IFRS 13의 접근법) | 13:30 ~ 15:10 |
| | 공공부문 측정(계속) | • 이슈 논의 | 15:30 ~ 17:00 |

| 일자 | 주제 | 내용 | 시간 |
|-------------|----------------|--|---------------|
| 9/20 (목) | 수익 | • 이슈 논의 | 09:00 ~ 10:40 |
| | 수익(계속) | • 이슈 논의 | 11:00 ~ 12:30 |
| | 전략 및 과업계획 | • 응답 검토 | 13:30 ~ 15:10 |
| | 전략 및 과업계획(계속) | • 응답 검토 | 15:30 ~ 17:00 |
| 9/21 (금) | 리스 | • 응답 검토 | 09:00 ~ 10:40 |
| | 수익(계속) | • 이슈 논의(IPSAS 23 개정에 따른 영향 및 시간 요건 접근법) | 11:00 ~ 12:00 |
| | 공공부문 특정 금융상품 | • 이슈 논의 | 12:00 ~ 12:30 |
| | 의결사항 및 지시사항 리뷰 | • 회의 중 의결사항 및 Staff 지시사항 검토 | 13:30 ~ 14:15 |
| | 업무계획 보고 | • 업무계획 관련 이슈 요약 | 14:15 ~ 14:40 |
| | 폐회사 | • 회의 결과 정리 | 15:00 ~ 16:00 |

나. 주요 내용 요약

다음은 3분기 IPSASB 정례회의 주요 안건의 내용과 의결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Social Benefits)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정부의 특정 '사회보장급여'의 비용과 부채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 재무제표상 어떻게 인식이 되고 측정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위해 Staff는 IPSAS 42, *Social Benefits*(IPSAS 42)의 초안을 제시했고, 이 초안과 ED 63, *Social Benefits*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음은 IPSAS 42를 확정하기 위해 IPSASB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들을 포함한다.

〈정례회의 안건 및 주요 의결사항: 사회보장급여〉

| 회의안건 | 의결사항 |
|--|---|
| 1. 사회보장급여의 정의와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와 사회적 위험의 정의에 동의하는지 여부 • 관련 적용지침(AG)과 결론 도출 근거(BC) 검토 |
| 2. 의무발생사건접근법(Obligating Event Approach): 인식 및 측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생사건접근법 중 인식과 측정 요건의 작성법 제공 |
| 3. 의무발생사건접근법(Obligating Event Approach): 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발생사건접근법 중 공시 요건의 작성법 제공 |
| 4. 보험접근법(Insurance Approach)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접근법의 작성법 제공 |
| 5. 기타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GFS와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IPSAS 22, <i>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about the General Government Sector</i>(IPSAS 22)의 개정에 동의하는지 여부 • IPSAS 1, <i>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i>(IPSAS 1)와 IPSAS 2, <i>Cash Flow Statements</i>(IPSAS 2)의 개정에 동의하는지 여부 |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의무발생사건접근법(Obligating Event Approach)”을 “일반적 접근법(General Approach)”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일반접근법의 공시와 관련해서는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내역,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소들에 대한 설명 등을 본문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또한 IPSASB는 IPSAS 42의 초안과 GFS상 ‘사회보장급여’의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IPSAS 22가 아닌 IPSAS 24, *Presentation of Budget Information in Financial Statements*에 추가적인 지침이 포함되도록 하였고, IPSAS 42의 개정으로 인한 IPSAS 1과 IPSAS 2의 개정을 승인하였다.

IPSAS 42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는 일반적 접근법과 보험접근법에 따라 회계처리가 가능하다. 일반적 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차기 급여에 대한 부채만 인식하게 되고, 보험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계약기간 동안 발생하는 전체 부채를 인식하게 된다. 어떤 회계처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관련 부채의 금액이 차이가 클 수 있고, 일반적 접근법의 경우 차기 급여에 대한 부채만 인식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현금주의와 다르지 않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IPSASB는 향후 사후이행검토(Post Implementation Review)를 통해 일반적 접근법과 보험접근법 간의 형평성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IPSAS 42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 비교환비용(Non-exchange Expenses)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환비용’의 인식과 측정을 위한 기준서를 개발하는 데 있다. IPSASB는 지금까지 공개초안(Exposure Draft: ED)을 승인하였고, 해당 ED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2021년 6월까지 기준서를 승인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ED 중 집합적서비스(Collective Services)와 재난구호(Disaster Relief)를 어느 방향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가 존재하는 보조금(grants), 기여금(contributions), 기타 이전(other transfers) 등에 대해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Public Sector Performance Obligation Approach)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비교환비용을 위한 PSPOA를 적용할 것을 Staff에게 지시하였다.

다음은 IPSASB가 이번 정례회의 때 ‘비교환비용’과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이다.

〈정례회의 안건 및 주요 의결사항: 비교환비용〉

| 회의안건 | 의결사항 |
|---|---|
| 1. 집합적 서비스(Collective Services)와 보편적 서비스(Individual Servic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서비스의 명칭 변경(Universally Accessible Services → Individual Services) • AG2와 AG3에 기초하여 집합적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의 정의를 IPSAS 19, <i>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i>(IPSAS 19)에 포함 |
| 2. 재난 구호(Disaster Relief)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안)의 개정된 부분이 재난 구호보다는 응급 구호(Emergency Relief)를 지칭 |
| 3. 비교환비용 - PSPO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SPOA가 몇몇 비교환비용(집합적 보편적 서비스, 보조·출연·기타이전)에 적용될 수 있음 • PSPOA를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재화와 용역을 이전할 권리를 자산으로 인식 |

IPSASB는 집합적 서비스와 보편적 서비스와 관련하여 두 가지 서비스의 회계처리는 같을지라도, 회계처리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서비스를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Staff에게 ED 재작성을 주문하였다.

또한, IPSASB는 ED(안)의 재난 구호 부분을 자원 제공자가 인식한 부채가 언제 충당부채로 인식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재작성할 것을 지시했고, 이때 자원은 현금뿐만 아니라 재화와 용역을 포함하고, 충당부채의 인식은 IPSAS 19의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따를 것을 결정했다. 재난 구호와 관련하여 IPSASB가 추가적으로 Staff에게 지시한 사항은 ① 응급 구호를 IPSAS 19의 핵심 본문에 포함하고, ② 정부의 발표 또는 정부의 행위가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를 발생시키는지 고려하며, ③ 측정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IPSAS 19의 지침을 참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PSASB는 '비교환비용'의 PSPOA와 관련하여 Staff에게 부채가 언제 인식될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지시했고, PSPOA를 설명할 수 있는 예시를 개발할 것도 지시하였다.

'사회보장급여' 프로젝트가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과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배경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많은 공기업들이 IFRS 15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회계 기준도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추고 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환비용에 공공부문수행의무접근법을 적용하면 보다 유용한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수익(Revenue)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현재 IPSAS 9, *교환거래로부터의 수익*, IPSAS 11, *건설계약*, IPSAS 23, *비교환거래로부터의 수익*에 흩어져 있는 '수익' 관련 지침을 개정하거나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준서 수준(standards-level)의 지침의 고안을 통해 교환·비교환 거래를 포함하는 한 개 이상의 IPSAS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를 위해 Staff은 IFRS 15와 정합성이 높은 IPSAS를 개발하고 IFRS 15의 '수행의무접근법'을 공공부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IFRS 15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타 강제적 기여(other compulsory contributions)와 징수(levies)를 포함시키기 위해 IPSAS 23을 확대하는 수정안도 제시했다.

다음은 IPSASB가 이번 정례회의 때 '수익'과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이다.

〈정례회의 안건 및 주요 의결사항: 수익〉

| 회의안건 | 의결사항 |
|---|---|
| 1. 공공부문에 적용하기 위한 IFRS 15, Revenue from Contracts with Customers의 수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검토(Binding arrangements, Contract Assets & Liabilities, Consideration, Exchange, Customer, Goods & Services, Stand-alone Price, Economic Substance, Enforceability, Distinct 등) |
| 2. 타 IPSAS 수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및 정의의 변경 등에 따라 타 IPSAS 기준서(IPSAS 1, 9, 12, 16, 17, 31 등)를 수정 |
| 3. 수증용역(Service in-kind)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증용역의 현행 회계처리를 유지(자산/수익 인식 안 함) • 다만 volunteer services에 대한 질적 정보 공시 |
| 4. 기타 강제적 기여금 및 징수 (Other compulsory contributions and levies)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음 |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용어의 검토를 통해 몇 개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관련 설명을 결론 도출 근거 또는 적용지침에 포함하도록 하였다.

〈수익 관련 용어의 변경〉

| 변경 전 | 변경 후 |
|--|--|
| “Contracts”, “Other Binding Arrangements” | “Binding Arrangements” |
| “Contract Assets”, “Contract Liabilities” | “Binding Arrangement Assets”, “Binding Arrangement Liabilities” |
| “commercial substance” | “economic substance” |

이 외에 “Consideration”, “Exchange”, “Goods and Services”와 같은 용어는 그대로 유지하고, 독립적인(stand-alone) 판매가액을 결정하는 방법도 유지하되, 필요한 경우 Expected Cost plus Margin 접근법이 원가회수 기준(cost-recovery basis)에 따라 제공되는 재화와 용역에도 적용된다는 설명 문구를 추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기타 강제적 기여금 및 징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결도 하지 않았지만, “taxes and other compulsory contributions and levies”가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피하고 거래가 조세인지 징수인

지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일관된(generic) 용어를 사용할 것과, 조세와 징수의 정의를 GFS에서 찾도록 Staff에게 지시하였다.

IPSASB는 동 프로젝트를 위해 기준서 간 용어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용어의 적정성을 검토했고 필요한 경우 용어를 변경하였다.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도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는데(예: 유가증권과 투자증권), 기준 간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PSASB의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여 국가회계기준의 용어 검토 및 변경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공공부문 측정(Public Sector Measurement)

동 프로젝트는 측정 및 측정 관련 공시 요건과 관련된 현행 IPSAS의 측정 규정들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의 측정 관련 지침을 제공하며 거래원가(transaction costs)와 차입원가(borrowing costs)의 회계처리를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PSASB는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자문보고서(Consultation Paper)와 공개초안의 동시 개발을 통해 자산·부채의 측정 관련 규정들을 포괄하는 단일의 IPSAS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Staff이 제시한 프로젝트개요서(Project Overview Paper)와 그에 따라 작성된 자문보고서 및 공개초안을 검토했다. IPSASB는 Staff와 프로젝트 T/F에게 적용지침이 개발되어야 하는 측정 기준, 적용지침의 종류 및 측정 관련 공시사항을 공개초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IFRS 13, 공정가치 측정 중 측정 관련 공개초안의 부록에 담길 문구에 대한 Staff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였다.

다음은 IPSASB가 이번 정례회의 때 공공부문의 '측정'과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이다.

〈정례회의 안건 및 주요 의결사항: 공공부문 측정〉

| 회의안건 | 의결사항 |
|-------------------------------------|--|
| 1. 프로젝트 개요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관련 기준의 배치 |
| 2. 공정가치 측정 문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RS 13, Fair Value Measurement'의 대부분의 문구를 적용지침 또는 타 IPSAS에 포함 |
| 3. 공개초안(Measur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개요 접근법으로 공개초안 개발 • 적용지침에 포함될 내용 지정 • 특정 주제와 관련된 지침은 개별 IPSAS에 계속해서 포함 |
| 4. 자문보고서(Public Sector Measurement)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젝트 개요 접근법으로 자문보고서 개발 • 서비스 잠재력/가능성에 따라 보유되는 자산관련 이슈를 개념체계의 측정 목적의 맥락에서 논의 |

IPSASB는 각각의 측정 기준의 정의와 설명(what), 측정 기준을 산정하는 방법(how), 결론 도출 근거(why)는 공개초안에 두고, 어떤 기준을 사용하고 어떤 공시사항이 필요한지(which)는 개별 IPSAS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개별 IPSAS에 있던 what 및 how와 관련된 규정이 모든 규정에서 삭제됨을 의미한다. 또한 측정 관련 공시사항 중 일반사항(generic)은 공개초안에, 구체적인(subject-specific) 사항은 관련 IPSAS에 두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Staff에게 CP와 ED를 프로젝트 개요 접근법을 적용하여 2018년 12월 회의까지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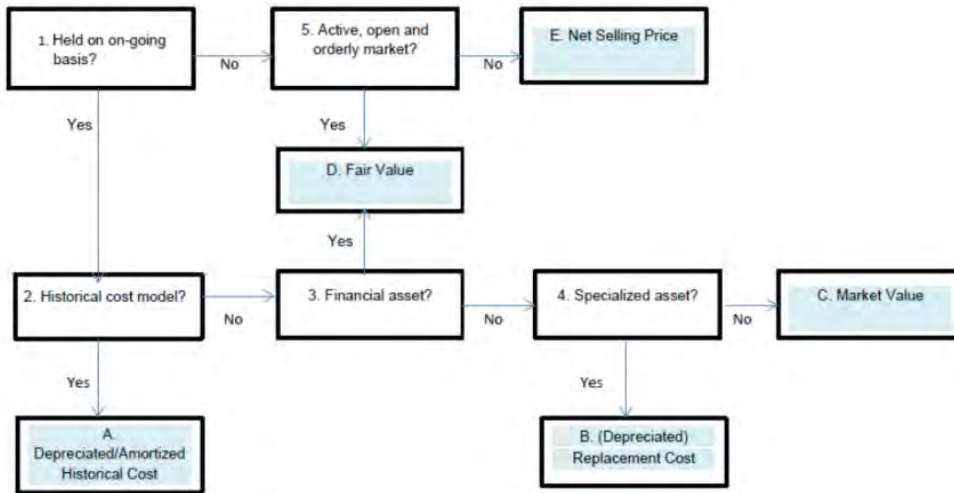
공정가치 측정 문구와 관련해서는 Staff와 프로젝트 T/F의 의견을 반영하여 'IFRS 13, 공정가치 측정'의 문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기로 했고, Staff에게 IPSAS 41, 금융상품 또는 타 개별 IPSAS에 속하는 구체적인(topic-specific) 문구에 대해 IFRS 13의 문구를 검토하고, 금융상품 프로젝트 T/F와 의논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IPSASB는 Staff에게 '측정' 공개초안의 적용지침 부록에 역사적 원가, 대체원가, 공정가치, 이행원가를 위한 일반적인 적용지침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공개초안의 목적, 범위, 정의를 개정하고 각각의 '측정' 기준에 대한 설명과 ED의 부록에 들어갈 일반적인 지침을 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IPSASB는 또한 Staff에게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의 측정에 대한 부록을 포함할지에 대해 권고할 것과 IPSAS 19의 "최선의 추정치(best estimate)"가 이행원가와 같은지를 판단할 것을 주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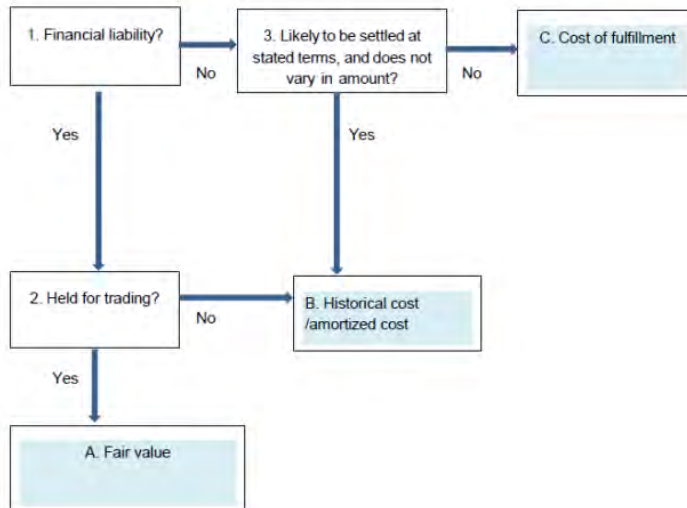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IPSASB는 자문보고서가 서비스 잠재력/가능성으로 인해 보유되는 자산에서 발생하

는 측정 이슈를 개념체계의 측정 목적의 맥락에서 충분히 다루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측정 기준을 선택할 때 다음 두 개의 흐름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흐름도의 개발을 Staff에게 지시했다.

〈자산의 측정 기준 흐름도〉



〈부채의 측정 기준 흐름도〉



현재 국가회계기준에는 ‘측정’ 관련 개념체계 및 별도의 기준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측정기준(역사적원가, 공정가액, 상각후취득원가, 상각후부채원가 등)이 개별 자산·부채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계기준 간 일관성을 제고하고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좀 더 포괄적이고 일관적인 측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산·부채의 측정 기준의 변경은 공공부문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측정 기준 변동의 동향 추적을 통해 국가회계기준의 측정 관련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 전략 및 과업계획(Stratgy and Work Plan)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각 국가 및 국제기구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19~2023년 동안 IPSASB가 주력해야 할 분야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IPSASB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 IPSASB는 전략 및 과업계획 2019~2023(Stratgy and Work Plan 2019~2023)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포함한 피드백에 대해 논의하였다.

IPSASB는 ‘전략’ 문서를 발행하기 전에 먼저 공공이익위원회(Public Interest Committee), 자문위원단(Consultative Advisory Group)에 자문을 구했고, 공공부문기준재정자포럼(Public Sector Standard Setters Forum)에서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였다. 이 결과물을 토대로 ‘전략’ 문서를 발행한 후에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남미 등지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성공리에 개최했고, 그 결과 중대한 제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2014년과 비교하여 현저히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

다음은 IPSASB가 이번 정례회의 때 ‘전략’과 관련하여 의결한 사항이다.

〈정례회의 안건 및 주요 의결사항: 전략〉

| Specific Matters for Comments(SMCs) | 의결사항 |
|-------------------------------------|--|
| 1. 전략적 목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F가 제시한 수정된 전략적 목표에 동의 |
| 2. 전략적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me B의 명칭을 “Maintaining IFRS Convergence”에서 “Maintaining IFRS Alignment”로 변경 |
| 3. 프로젝트 우선순위 기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정된 프로젝트 우선순위 승인 • 2020 중기 과업계획 자문을 위한 프로젝트 선택을 위해 해당 기준을 사용하기로 결정 |
| 4. Theme A(공공부문 특정 이슈를 위한 기준 재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me A에 대한 업무계획에 두 개의 프로젝트(천연자원, 개념체계의 제한된 범위 검토)만 추가 • 이 두 개의 프로젝트를 국가별 기준 재정자(National Standard Setters)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장려 • 2019년 공공부문기준재정자포럼에 국가별 기준 재정자들이 이끄는 팀들의 리서치에 대한 세션 포함 |
| 5. Theme B(IFRS와 정합성 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me B에 대한 업무계획에 큰 사이즈의 프로젝트를 제외 • Theme B를 위한 자원이 있을 경우 수행이 가능한 제한된 범위(limited-cope)의 프로젝트를 파악하기 위해 IPSAS-IFRS Dashboard를 사용 • 이해관계자들의 업무 강도를 고려하여 연 단위 개선 수행 |
| 6. Theme C(부록 A 프로젝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인율, 차등보고, 공공부문에서 재무제표의 표시, 조세지출에 대한 초기 연구 |
| 7. Theme D&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me D와 Theme E와 관련된 ‘전략’ 문구 채택 |
| 8. 기타 이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 문서 최종 승인 |

IPSASB는 2년에 한 번 공공부문기준재정자포럼을 개최하고 포럼의 산출물을 중·단기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한다. 또한, ‘전략’ 문서 개발과 여러 지역에서의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통해 각국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 결과 여러 나라,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의 관점을 통해 고품질의 회계기준이 완성된다. 우리의 국가회계기준에도 한 분야가 아닌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생각을 반영하고, 다른 국가의 동향을 계속해서 파악한다면, 편협하고 지역적인 회계기준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사용이 가능한 회계기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 리스(Leases)

동 프로젝트의 목적은 IFRS 16, *Leases*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 제공자와 리스 이용자를 위한 리스 회계처리를 수정하고, IPSAS 13, *Leases*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IPSAS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IPSASB는 네 개의 SMCs(Specific Matters for Consideration)에 대한 응답자들의 의견과 리스 프로젝트의 전략을 검토하였다. IPSASB는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ED 64, *Leases*에서 제시한 대로 사용권(right-of-use) 모형을 적용할 것을 잠정적으로 의결했고, 응답자들이 제기한 모든 이슈를 상세하게 다루기 위해 ‘리스’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다음은 IPSASB가 이번 정례회의 때 ‘리스’와 관련하여 Staff에게 지시한 사항이다.

〈정례회의 안건 및 주요 지시사항: 리스〉

| 회의안건 | 지시사항 |
|---|---|
| 1. Lessee 회계(SMC 1) - 사용권 모형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ED 64 이행 이슈, 사용자의 필요, GFS와의 연관성, PPP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4분기 회의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응답 분석 |
| 2. Lessor 회계(SMC 2 & 3) - ‘risk and rewards’ 모형보다 사용권 모델 적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 회의를 위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리스 제공자와 할인리스계약의 회계처리 대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위해 로드맵 개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념체계 및 IPSAS와의 일관성 ② 리스 제공자 관련 IASB의 제안 ③ IFRS 16 및 IASB의 개념 체계와의 일관성 ④ ED 64와 관련된 IPSASB의 결정과 IFRS 16과 관련된 IASB의 결정과의 비교 ⑤ ED 64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 ⑥ GFS와 일관성 ⑦ ED 64 이행 이슈 |
| 3. Concessionary Lease (SMC 4) | |
| 4. 리스 프로젝트 진행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분기 회의를 위해 다음의 5단계 로드맵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st : 리스 사용자 회계처리에 대한 결정(ED 64에 대한 응답자들의 답변 검토 포함) - 2nd : IFRS 16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를 받아들일지 결정 - 3rd : IFRS 16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유 논의 - 4th : 할인리스계약에 대한 접근법 결정 - 5th : 리스 프로젝트의 향후 프로세스 결정 |

현행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리스를 세 가지 규정(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리스에 따른 자산과 부채의 평가), 리스 회계처리지침, 민간투자사업(BTO·BTL) 회계처리지침)에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동 규정들에서는 국가회계 실체를 리스 이용자로 전제하여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만 규정하고 있다. '사용권 모형' 대신 '소유에 따른 위험-효익 모형'을 적용하여, 국가회계기준 및 리스회계처리지침에서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국가회계 실체가 부담하는 경우 금융리스, 이외의 경우 운용리스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고, 임대형 민자사업(BTL) 회계처리지침에서는 사업 위험(수요변동위험)을 국가회계 실체가 부담하며, 지급 임대료를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 대가로 보아 자산과 미지급금을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서는 리스 이용자의 회계처리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 규정이 없는 중앙정부와 K-IFRS등을 적용하는 공기업·공공기관 간의 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존재한다. IPSASB는 최근 리스 이용자 회계처리에 '사용권 모형'을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따라서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와 관련된 IPSASB의 동향 추적을 통해 국가회계기준 내의 리스 제공자 회계처리 개발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IPSASB 9월 정례회의(9.17~9.23), 캐나다 토론토〉

09

공지사항

1 2019년도 연구과제 수요조사

우리 센터에서는 2019년도 수행할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과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제안받은 주제는 자체 심의를 통해 기획과제, 수탁과제, 위탁과제 등으로 선정하여 수행할 예정입니다. 과제 제안과 관련한 센터의 팀별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 의견제안 코너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뉴스레터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는 뉴스레터를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편을 통해 정기적으로 뉴스레터 구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①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에서 가입신청하거나 또는 ② Tel. 044-414-2265(연구행정총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의 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에서 진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 기준에 대한 단순 질의에서 문서 질의까지 질의 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뉴스레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행물과 세미나 자료, 연구보고 자료 등 국가회계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중이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편 집**

정도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전체 총괄)

이남주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현지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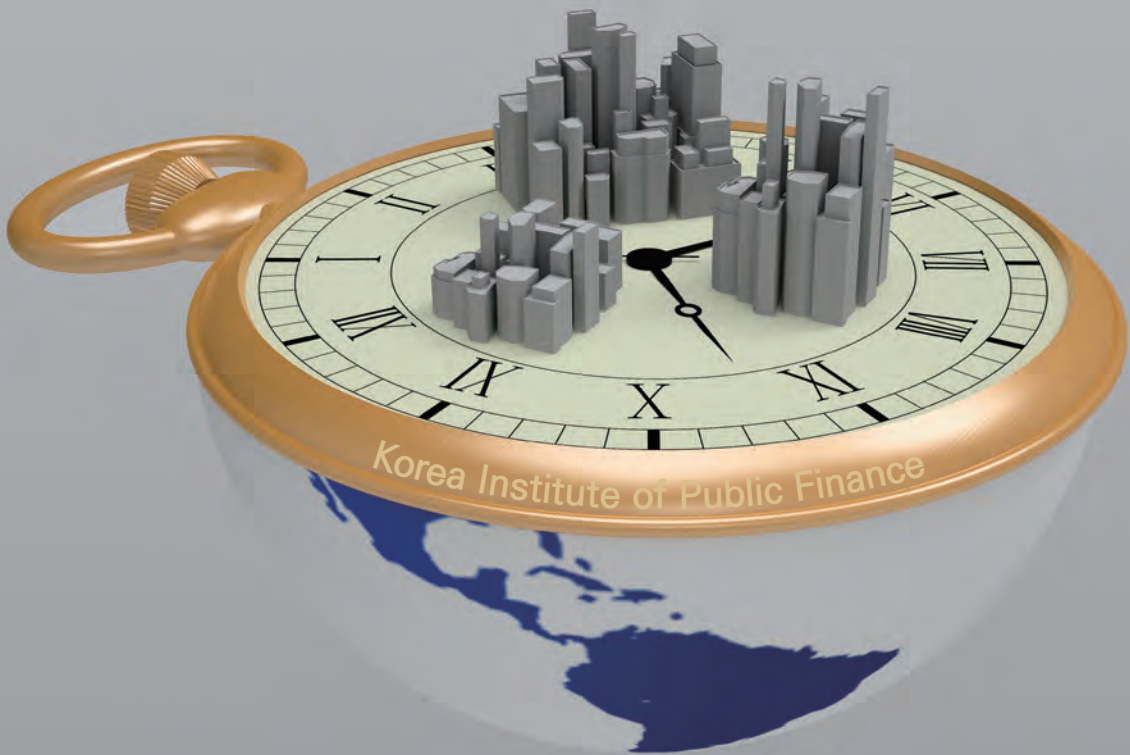
■ **발행인**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발행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 044-414-2265(센터), <http://gafsc.kipf.re.kr>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선도합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Homepage <http://gafsc.kipf.re.kr>

2018년 12월 31일 발행